

PEACEKEEPING OPERATION JOURNAL

PKO 저널

VOL. **25** December 2022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ROK PKO Center,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Contents

「인도주의 통로」의 국제법적 관점과 도전 과제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전문교수 권구일	5
유엔 PKO활동의 삼각파트너십(TPP) 및 역량협력체계(LCM) 강화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 교수 박상중	39
MCS를 통해 바라본 동명부대 발전방안 연구 중령(진) 김세하	61
블루라인 현장에서 본 UNIFIL 연락처의 역할과 한계점 소령 엄태섭	83
유엔 서부사하라 평화유지임무단(MINURSO)과 군 옵서버의 역할 필요성 소령 김수현	97



「인도주의 통로」의 국제법적 관점과 도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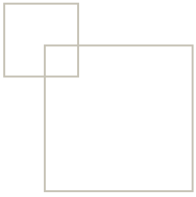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s
of Humanitarian Corridors and Challenges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전문교수 권구일
Gwon, Guil



국문초록

인도주의 통로는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지고 규제되는가? 여기서, 일반적인 용법에서 ‘안전지대’와 ‘보호지대’를 포괄하는 용어의 혼합으로 인해 약간의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법에 따르면, 교전국이나 외부 당사자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보호 구역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들의 일반적인 목적은 민간인들을 치열한 전투의 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다른 관련 특징들에 따라, 그들은 각각 다른 법적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무력충돌의 법칙(LOAC)은 특정 종류의 ‘보호구역’에만 적용된다. 이것들은 1949년 제네바 협약(GC)과 그 추가 의정서에 포함된 다양한 조항들에 의해 규제된다. 인도주의 통로는 점령지역에서 수 많은 민간인을 구했으나 생명을 잃기도 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인도주의 통로와 관련한 법적, 안전과 효과성에 많은 논쟁이 일어났다. 이 글은 인도주의 통로의 역사와 사례 및 국제법적 관점에서 법적 이슈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처한 도전과제와 제안을 하였다.



What are humanitarian corridors?, How is formed and controlled? Generally, this sometimes cause the confusion usage between the safety zone and protected zone.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law, various this kinds of protected zone is possibly formed by conflict parties or external party. the main purpose is disengage the civilian from the deadly combat frontline. However, based on the how was made and characteristics of that, the international law will be applicable differently. LOAC is only applicable the specific protected zone following the Geneva Convention and additional protocols such as various articles. Humanitarian corridors saved hundreds t hounds of civilians in the seized area. but have lost either.

Most recently, Russia and Ukraine war brought the a lot of controversial issues regarding the humanitarian corridors' legal, safety and effectiveness. This article looks back the history, back ground, cases and legal issues from the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Finally, brought the challenges we are facing and suggest the proposals.

ABSTRACT

「인도주의 통로」의 국제법적 관점과 도전 과제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s of Humanitarian Corridors and Challenges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전문교수 권구일

Gwon, Guil

I. 머리말

인도주의 통로는 무엇이며, 어떻게 규제되는가? 여기서, 일반적인 용법에서 ‘안전지대’와 ‘보호지대’를 포괄하는 용어의 혼용으로 인해 약간의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법에 따르면, 교전국이나 외부 당사자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보호 구역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들의 일반적인 목적은 민간인들을 치열한 전투의 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다.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다른 관련 특징들에 따라, 그들은 각각 다른 법적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무력충돌의 법칙(LOAC)은 특정 종류의 ‘보호구역’에만 적용된다. 이것들은 1949년 제네바 협약(GC)과 그 추가 의정서¹⁾에 포함된 다양한 조항들에 의해 규제된다.²⁾

인도주의 통로는 인도주의 단체들이 분쟁 환경에서 설정할 수 있는 가장 극적

1) Which refer to hospital zones/localities, safety zones/localities, neutralized zones, and demilitarized zones respectively. Article 23 GC I and Article 14, 15 GC IV, Article 60 Additional Protocol I (API) to the 1949 GC

2) Blog of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https://www.ejiltalk.org/the-international-law-of-protected-spaces-and-the-collapse-of-the-humanitarian-corridors-in-ukraine/>

인 방식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또한 가장 예측 불가능하고, 분쟁이 있는 지역에서 전선을 넘어가는 민간인들과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상당한 위험에 노출하는 것 중 하나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인도주의 통로는 포위된 지역에 갇힌 민간인 수십만 명의 목숨을 구했다.



하지만, 강한 압박감과 제한된 경험으로 서둘러 세운 최후의 수단인 “인도주의 통로”로 인해 수천 명이 목숨을 잃거나 사라지기도 했다.

지난 3월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인들을 대피시키겠다고 인도주의 통로를 제안하였다.³⁾ 양측은 주기적으로 합의해 왔으나 결과

는 엇갈렸다. 다른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하는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하철역, 도서관, 극장에 대피하였다. 러시아군은 휴전과 인도주의 통로를 개설해 우크라이나인들이 대규모 공격을 받고 있는 도시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피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만 접근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러한 통로를 사용하는 동안 보호되어야 할 지역에 러시아의 반복적인 공격과 폭격은 지속되었다. 인도주의 통로에 대한 러시아군의 폭격과 공격으로 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하였다. 또한 탈출하지 못한 민간인들은 필수적인 물자가 부족한 심각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였다.⁴⁾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터키, 유엔이 7월에 체결한 협정에 따라 우크라이나로부터의 곡물 선적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밀, 옥수수, 해바라기 기름이 세계 시

3) Humanitarian corridors는 프랑스 대통령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과 통화시 제안. Kyiv to Hostomel, Rakivka, Sosnovka, Ivankiv, Orane or Chernobyl (all Ukraine) and Gómel (Belarus), then by air to Russia / Kharkiv to Nekhoteyevka or Bélgorod (both Russia), then by air, road or rail / Mariúpol to Novoazovsk (Ukraine), Taganrog or Rostov-on-Don (both Russia), then by air, road or rail to a chosen destination or temporary holding place/Mariúpol to Portivske, Mangush, Respublika, Rosivka, Bilmak, Polohi, Orekhiv or Zaporizhzhya (all Ukraine) / Sumy to Sudzha or Bélgorod (both Russia) then by any transport / Sumy to Golubivka, Romny, Lohvitsya, Lubny or Poltava (all Ukraine)

4) <https://247newsagency.com/top-news/81919.html>, Russiaand Ukraine | “Completely immoral”: Kiev’s response to Moscow’sproposed humanitarian corridors into Russian territory

장에 나온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 봉쇄는 식량 가격을 치솟게 했고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더 많은 기아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우크라이나 남쪽에서는 러시아가 점령한 케르손 지역과 궁극적으로 2014년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를 해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양측이 서로를 포격으로 비난하고 있어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의 재난에 대한 두려움은 온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 서방의 무기 공급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진격을 늦추는 것을 돕고 있다. 특히, 미국이 제공한 하이마스(High 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s)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포병에 맞서 러시아군의 후방에서 더 멀리 공격할 수 있게 되었으나 민간인의 피해는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분쟁 지역을 떠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민간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한 가지 방법은 인도주의 안전 통로라고 불리는 인도주의 통로를 통과하는 것이다. 인도주의 통로가 무엇이며 배경과 역사적 사례에서 그것이 어떻게 조직되고 운영되며 법적 보호와 도전 과제에 대해 알아보자.

II. 인도주의 통로에 대한 담론

인도주의 통로와 관련된 유엔결의안

인도주의 통로는 유엔 총회 결의안 45/100에 법적 근거가 있다. 유엔결의안에서는 “구호통로(relief corridor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유엔은 1990년에 정치적, 군사적 목적이 아닌 인도적 목적을 위한 “구호통로”의 개념을 인정하는 결의안⁵⁾을 통과시켰다. 유엔이나 기타 국가들은 때때로 전쟁 당사자들이 이러한 경로에 합의하는 것을 돕는다.⁶⁾

5) UN General Assembly (GA) resolution 45/100 humanitarian emergency assistance to victims of natural disasters and similar emergency situations, 1990.12.14

6) ... in particular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on a temporary basis, where needed, and by means of concerted action by affected governments and the governments and intergovernmental,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oncerned, relief corridors for the distribution of emergency medical and food aid. UN General Assembly (GA) resolution 45/100. Para 6

...facilitating the delivery of appropriate humanitarian assistance,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relief corridors. UN General Assembly (GA) resolution 45/100. Para 8.

인도적 지원의 핵심 가이드 문서로서는 UN General Assembly (GA) resolution 46/182⁷⁾ (19 Dec 1991, Principle 4)이다. “각 국가는 무엇보다도 자국 영토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다른 긴급사태의 희생자들을 돌볼 책임이 있다.” 유엔 총회 결의안에는 4대 인도주의 원칙인 중립성, 공정성 및 (운영적) 독립성이 포함되었다.(부록 #2). 인도주의 단체들은 적어도 네 가지 핵심 원칙인 인간성, 공정성, 중립성 및 독립성(운용성)의 원칙을 시행해야 한다. 인도주의 원칙은 관련 자들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그들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인식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도주의 행위자들은 모든 민간, 군사 및 기타 분쟁 당사자들과 원칙에 입각한 행동과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한다. 결의안 부록 제35항(d)에서 “필요한 경우 분쟁 당사자의 동의를 받음으로써 협상을 포함한 긴급지원의 신속한 제공 지역에 활동 기관의 접근, 필요한 곳에 임시 구호 통로, 평온한 일과 지역(days and zones of tranquility), 기타 다른 형태의 형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촉진한다.”가 포함되었다. UNGA 결의안 46/182에 따라 OCHA는 분쟁 중인 모든 행위자들과 인도주의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책임을 진다.

1990년대 이래로, 대부분의 인도주의 통로는 유엔의 후원으로 요청되고 협상 되어 왔다. 인도주의 통로는 통로 내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것에 동의하는 분쟁 당사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또한 민간인들이 집단적으로 안전을 추구할 때 다른 민간인이나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자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Kukavica and Plesnicar 2016) 인도주의 통로는 민간인을 위협에 빠뜨리는 행위자의 명시적 목표에 대하여 군사적인 수단으로 강화될 수도 있다.⁸⁾

유엔은 2020년 7월 1일 COVID-19 대유행에 따라 무력충돌의 모든 당사자에게 적용 가능한 국제 인도법 및 난민법을 포함한 국제법 준수에 따라 인도적,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의 인도적 원칙 하에 인도적 지원의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으며,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의료적 피난을 위해 최소한 90일 연속 전 세계적인 정전을 촉구하는 결의안(Resolution 2532(2020))을 채택하였다.

7) UNGA Res 46/182, Strengthening of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emergency assistance of the United Nations.

8) <https://brill.com/view/book/9789004431140/BP000044.xml?language=en&body=fullhtml-43184>, Humanitarian Corridor 저자: Sophia Hoffmann 참조

분쟁의 중지 관련 정의

유엔의 결의안이나 핸드북 등에서는 민간인 보호를 위한 활동 중 하나로 인도주의 구호 활동(Humanitarian relief operations⁹⁾)을 사용하고 있다. 분쟁 중에, 분쟁 당사자들은 민간인의 생명을 구조하거나 평화회담을 위해 분쟁의 일시 중지를 동의할 수 있다. 특히, 순전히 인도적 목적과 정치 과정의 일환으로서 일시 중단을 합의하는 것에 대해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휴전, 완충지대, 인도주의 접근, 안전지역, 교전 중지 등 용어를 흔히 접한다. 유엔이 발행한 Civil-Military Coordination Field Handbook에서는 인도주의 구호 활동 (Humanitarian relief operations)과 인도주의 통로 (Humanitarian corridor¹⁰⁾)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위 책에서 Humanitarian negotiation, Deconfliction arrangements, Days of tranquility, Area security 등과 함께 인도주의 통로 (Humanitarian corridor)를 언급하고 있다. 인도주의 통로 (Humanitarian corridor)는 이러한 인도적 지원 활동의 수단¹¹⁾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래는 관련된 용어의 정의이다.¹²⁾

휴전(Ceasefire)은 분쟁 당사자들이 정치적 과정의 일부로서 전형적으로 동의 하에 전투를 중지하는 것이다. 그것은 장기적인 의도를 가지고 분쟁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것의 목표는 통상 당사자들이 영구적인 정치적 해결 가능성을 포함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전 중지(Cessation of hostilities)는 분쟁 당사자들이 정치적 대화와 지속적인 휴전을 향한 발걸음을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전쟁으로부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의도된 적극적인 적대행위의 중단이다.

교전 일시 중단(Temporary cessation of hostilities)은 특정 기간 모든 관련

9) “인도적 구호 활동”은 종교 예배에 필요한 물건뿐만 아니라 식품, 물, 의약품, 의류, 침구류, 생존에 필수적인 피난처, 난방 연료, 기타 공급품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활동.

10) Civil-Military Coordination Field Handbook (2018), Humanitarian corridors: Negotiation of an agreement by all parties to allow the safe passage of goods and / or people for humanitarian purposes(p.62). Key Terms and Definitions : Specific routes and logistical methods agreed upon by all relevant parties to allow the safe passage of humanitarian goods and/or people from one point to another in an area of active fighting.(p.167)

11) Humanitarian organizations must consider all alternative means for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access.

12) Glossary of Terms: Pauses During Conflict, The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HA) 정의

당사자가 합의한 전투 중지를 말하며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수행된다. 이러한 경우, 합의는 어떠한 인도주의적 활동이 수행되는 활동의 지리적 영역과 특정 기간을 식별한다.

인도주의 통로(Humanitarian corridor)는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인도주의 물품 및/또는 사람들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도록 모든 관련 당사자가 동의한 구체적인 경로 및 물류 방법이다.

평온한 날들(Days of tranquillity) UNICEF가 주로 사용하는 메커니즘으로, 종종 WHO와 협력하여 분쟁 중에 아동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국가적인 예방접종 캠페인 또는 기타 독점적 인도주의 활동이다. 이는 지정된 날짜 동안 의료 및 기타 직원의 작업을 간섭하지 않고 접근을 허용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자의 동의가 요구된다.

분쟁 해결 협정(De-confliction arrangements)은 인도주의적 행위자와 분쟁 당사자 간 구호 활동의 시간과 장소를 조정하기 위해 물류 정보를 교환한다. 협정은 군사작전이 인도주의 인력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며, 구호물자 또는 인도적 활동의 이행, 또는 수혜자를 위협에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¹³⁾

인도주의 통로란 무엇인가?¹⁴⁾

인도주의 통로 또는 안전 통로는 본질적으로 무력충돌 당사자들의 합의로 특정 지리적 지역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 안전한 통행을 허용한다. 그들은 민간인들이 떠나도록 허락할 수 있고, 인도적 지원이 들어오도록 허락할 수도 있으며, 부상자, 아프거나 사망한 사람들의 대피를 허용할 수도 있다.

즉, 인도주의 통로는 위험에 처한 민간인들이 도움을 받거나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경로이다. 인도주의 통로는 매우 제한적이고 좁은 공간으로 정의되고 특징지어지며, 이는 더 넓거나 제한되지 않은 공간 내에서 수행되는 인도주의적 프로젝트와 구별된다.

13) Civil-Military Guidelines & Reference for Complex Emergencies, UN-CMCoord UNITED NATIONS HUMANITARIAN CIVIL-MILITARY COORDINATION, 3장 Non-Binding Guidelines, IV. Alternatives to Armed Escorts에서는 Humanitarian negotiation, Deconfliction arrangements, Humanitarian pause, Humanitarian corridors, Days of tranquillity, Remote management / programming, Low-profile approach, Area security, Suspension or cessation of operations 등 10개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14) <https://www.icrc.org/en/document/how-humanitarian-corridors-work>, How humanitarian corridors work to help people in conflict zones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참조

인도주의 통로는 그 범위의 한계로 인해 이상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결정적으로, 안전한 통행 협정이 있든 없든 민간인들은 포위된 지역에서 대피할 수 있어야 하며, 인도주의 단체들은 무력충돌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은 민간인을 보호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국제 인도법의 적대행위 규칙이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

인도주의적 일시 중단은 분쟁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순수한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한 적대행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다. 그것은 보통 특정한 시간과 지역을 위한 것이다. “인도주의적 일시 정지”와 “인도주의적 통로”는 국제 인도법의 용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 일시 정지 및 통로와 관련된 논의의 틀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국제 인도법 규칙이 있다.

국제 인도법은 “전쟁법” 또는 “무력충돌법”으로도 알려져 있다. 국제 인도법(International Humanist Law, IHL)은 모든 분쟁 당사자들이 인도주의적 이유로 그들의 영향을 제한하고자 하는 구속력을 가진 법이다. 그것은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거나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전쟁의 수단과 방법에 제한을 가한다. 국제 인도법에는 안전한 통로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대신 민간인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 적대행위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고 국제적십자사(ICRC)와 같은 공정한 인도주의 기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교전이 심한 지역에서 안전한 통행 활동이 있더라도, 그 지역을 떠날 수 없거나 떠나고 싶지 않은 민간인은 여전히 국제 인도법에 의해 보호되고 인도적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엔은 인도주의 통로를 무력충돌의 일시적 중단을 위한 몇 가지 가능한 형태 중 하나로 간주한다. 그것은 특정 지역과 특정 시간 동안 비무장 지대(DMZ)이며, 무력충돌의 양측 모두의 동의하에 시행된다. 이 통로를 통해 분쟁 지역에 식량과 의료 지원을 제공하거나 민간인을 대피시킬 수 있다. 이 통로는 도시가 포위되고 사람들이 기본적인 식량, 전기, 물과 단절될 때 필요하다.¹⁵⁾

국제 인도법 위반으로 인도주의적 재앙이 전개되는 경우, 예를 들어 민간인 목표물에 대한 대규모 폭격을 할 경우, 인도주의 통로가 결정적인 구호를 제공할 수 있다. 대부분, 인도주의 통로는 유엔에 의해 협상된다. 때로는 지역 단체들에 의

15) Blog of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https://www.ejiltalk.org/the-international-law-of-protected-spaces-and-the-collapse-of-the-humanitarian-corridors-in-ukraine/> The International Law of Protected Spaces and the Collapse of the Humanitarian Corridors in Ukraine

해 설립되기도 한다. 그러나 통로 설치를 위해서는 모든 측이 합의해야 하므로 군사적 또는 정치적 남용의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통로는 포위된 도시로 무기와 연료를 밀반입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한편, 유엔 옵서버, NGO, 언론인들이 전쟁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분쟁 지역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인도주의 통로에 대한 접근은 분쟁 당사자들에 의해 결정된다. 그것은 보통 중립적인 행위자들, 유엔 또는 적십자와 같은 원조 단체들로 제한된다. 그들은 또한 통로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면적, 운송 수단(트럭, 버스 또는 비행기)을 결정한다. 인도주의 통로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통해 발생할 수 있다.¹⁶⁾

인도주의 통로의 특성

인도주의 통로의 필요성은 무력충돌이 많은 수의 민간인들이 기본적인 필요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될 때 발생한다. 이것은 분쟁 당사자들이 민간인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고 전투를 할 때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의도적으로 공세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공세는 무장한 행위자들이 의도적으로 주거 지역을 물, 전기, 음식, 의료로부터 차단하고, 효과적으로 민간인을 인질로 삼는 위험이 존재하다.

인도주의 통로는 통로 내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데 동의하는 무장 행위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 인도주의 통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분쟁과 재난 지역에서 발생했다. 인도주의 통로는 20세기 중반부터 설치되었다.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인도주의 통로들은 유엔의 후원으로 요청되고 협상이 이뤄지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또한 민간인들이 공동으로 안전통로를 찾고 다른 민간인들¹⁷⁾ 또는 국가의 도움을 받을 때 자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인도주의 통로는 민간인을 위협에 빠뜨리는 행위자의 명시적 목표에 대응하여 군사적인 수단으로 시행될 수 있다. 인도주의 통로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의 일시적인 성격이다. 모든 인도주의 통로는 어느 시점에선가 열리고 닫히거나 나타나거나 사라진다. 즉, 그것들은 하루 또는 몇 년 동안만 존재하거나 특정 경우에 반

16) www.de.com, What are humanitarian corridors? 참조

17) 비폭력 평화유지군(Non violent Peaceforce, NP)은 민간인을 보호하고 무력 분쟁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폭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초당파적인 비무장 평화유지 단체이다. NP는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와 특별협업체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달라이 라마, 데스몬드 투투 전 남아프리카 대주교 등 9명의 노벨평화상 수상자에 의해 승인을 받았다. 2016년, 비폭력 평화군은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다.

복적으로 열릴 수 있다. 인도주의 통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며, 무기나 다른 자원을 밀수하는 경로로 무장한 행위자들에 의해 악용되기도 한다.

인도주의 통로 운영 사례¹⁸⁾

안전한 통로는 스페인 내전 기간인 193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36년 11월 마드리드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후, 1936년 말과 1937년 초, ICRC는 빌바오에서 산세바스티안까지 500명 이상을 대피시켰으며 1937년 9월부터 11월까지 15대의 적십자 트럭으로 마드리드에서 발렌시아로 2500여 명을 대피시켰다.¹⁹⁾

드문 경우지만 인도주의 통로는 분쟁 당사자들 중 한쪽이 조직하는 경우도 있다. 유명한 예로는 1938년부터 1939년까지의 킨더 수송(Kinder Transport)²⁰⁾이 있다. 유대인 아이들은 나치의 통제하에 있는 지역에서 영국으로 대피했다. 이는 1949년 제네바 협약의 전쟁 중에 민간인들이 의약품과 같은 중요한 물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2년부터 1995년까지 보스니아 인종 청소의 잔인하고 체계적인 캠페인의 결과로, 전쟁 내내 보스니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뿌리 뽑혔다. 특히 포위된 사라예보, 스레브레니차, 제파, 고라즈데, 비하크 등에서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인도주의적 원조에 의존하게 되었다. 국제 사회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주도하는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에 주로 집중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950,000메트릭 톤을 수송했다. 보스니아에서 약 270만 명에게 인도적 지원을 했으며 1992년에서 1995년 사이에 그것은 UNHCR의 사상 최대의 인도주의 작전이 되었다.²¹⁾

18) <https://www.icrc.org/en/document/how-humanitarian-corridors-work>, How humanitarian corridors work to help people in conflict zones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참조

19) reliefweb.int

20) Kindertransport, 1938-40: 1938년부터 1940년까지 킨더 트랜스포트(Children's Transport)는 일련의 구조 활동을 일컫는 비공식 명칭이다. 이러한 구조 노력은 수천 명의 난민 어린이들을 나치 독일에서 영국으로 데려왔다. 1938년 11월 나치 정권이 독일에서 조장한 반유대주의 폭력이 일어나자 영국 정부는 독일 제국(최근 합병된 영토 포함)에서 17세 미만의 미동반 미성년자의 영국 입국을 난민으로 허용했다. 독일 제국 내의 유대인 단체들은 영국으로 가는 수송을 계획했다. 영국의 아동 복지 단체들은 아이들의 보살핌, 교육,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국에서 이주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 1938년 12월부터 1940년 5월까지 킨더 수송은 영국에서 약 10,000명의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왔다. 어린이 수송 프로그램의 많은 어린이들이 영국 시민이 되거나 이스라엘, 미국, 캐나다, 호주로 이민을 갔다. 그들 중 대부분은 홀로코스트 동안 살해된 부모님을 다시는 보지 못했다. <https://encyclopedia.ushmm.org/content/en/article/kindertransport-1938-40>, Holocaust Encyclopedia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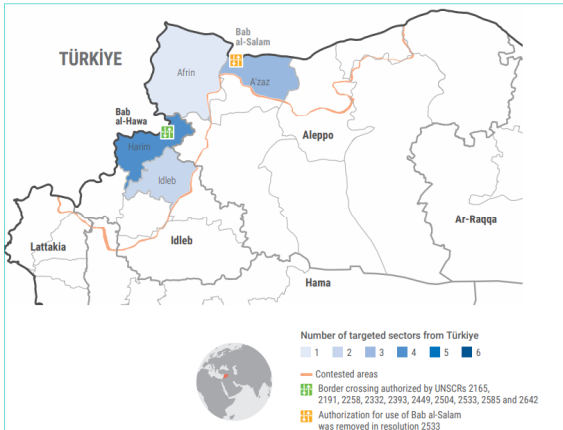
21) SCRs 824 and 836 established the 'safe areas' of Sarajevo, Tuzla, Zepa, Gorazde, Bihac and Srebrenica.

2011년 이후, 자선 단체들이 다른 나라에 망명이나 피난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위기 지역에서 가용자산을 활용하여 민간인들을 수송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중 인도주의 통로가 등장하기도 했다.

2014년 튀르키예로 부터 첫 UN 선적 이래 시리아에서 유엔 기구들은 또한 사람들이 교육, 건강, 영양, 보호, 물과 위생 등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²²⁾ 2022년 7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튀르키예에서 시리아 북서부로 6개월 동안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유엔 기구들을 승인하는 국경 간 결의안을 갱신했다.²³⁾

시리아에서 러시아가 12개월에서 6개월로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유엔의 국경 간 원조 노력을 둘러싼 중대한 도전과 불확실성을 야기했다. 이 결과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악화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내 외교적 긴장감을 반영한 것이다. 그것은 또한 유엔의 국경 간 원조 메커니즘의 취약성을 강조했다. 2022년 6월 현재 서북 시리아에는 410만 명의 빈곤층이 있으며, 310만 명은

식량 불안 상태이며, 170만 명은 국내 피난민이 되어 수용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7월 8일, 러시아는 유엔이 시리아 정부의 승인 없이 1년 동안 시리아에 국경을 넘는 원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거부하였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바브 알-하와 통로점을 6개월만 더 개방하는 결의안에 동의했다.



22) NORTHWEST SYRIA, United Nations cross-border operations from Türkiye to Syria, As of 31 July 2022, www.unocha.org/syria

23) Resolution 2642 (2022) 2. Decides to extend the decisions in paragraphs 2 and 3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165 (2014), for a period of six months, that is, until 10 January 2023, only for the border crossing at Bab al-Hawa, with a further extension of an additional six months, that is, until 10 July 2023, which will require a separate resolution confirming this extension, and requests the Secretary-General to provide a special report on the humanitarian needs in Syria no later than 10 December 2022,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t its 9089th meeting, on 12 July 2022 (formerly 2165 and 2191 in 2014, 2258 in 2015, 2332 in 2016, 2393 in 2017, 2449 in 2018, 2504 and 2533 in 2020, and 2585 in 2021)

2018년 시리아 구타(Ghouta) 피난 때도 인도주의 통로가 만들어졌다.²⁴⁾ 하지만 민간인 통로나 전투 중단 요구가 허사였던 전쟁과 갈등이 적지 않다. 그러나 역사는 인도주의 통로가 어떠한 보장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민들은 안전해야 할 경로를 따라 탈출하려다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다.²⁵⁾

Ⅲ. 인도주의 통로의 법적 틀 26)

인도주의와 특별한 관련이 있는 국제법에는 국제 인도법(IHL)/무력충돌법(LOAC), 국제인권법(IHRL), 난민법 등이다.²⁷⁾ 국제 인도법(IHL), 일명 무력충돌법(LoAC) 또는 전쟁법(jus in bello)은 국가 간 또는 비국가 간 분쟁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전쟁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분쟁에 참여하지 않거나 더 이상 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민간인에게 공정한 인도적 구호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조약의 원천은 헤이그 협약, 제네바 협약(GC)과 그 추가 의정서(AP)이다. 다수의 국제 인도법 규칙은 국제 관습법의 일부로부터 형성되었다. 특히 1949년의 4개의 제네바 협약은 보편적으로 비준되었으며 국제 인권법은 무력 분쟁 중에도 계속 적용된다.²⁸⁾

인권은 차별 없이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다. 최초의 국제적 인정은 1945년 유엔헌장에 있다. 그 이후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최초로 인권을 정의하였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ICCPR) 및 경제, 사회 및 문화에 대한 권리(ICESCR)는 최초의 보편적 인권 조약이다. 여러 지역 조약과 추가적인 국제 조약이 이를 보완

24) 시리아 내전 최대 격전지 동구타에서 3월 9일 유엔 휴전 결의안에서 제외된 단체 중 하나인 자바트 파테 알삼(옛 알누스라 전선) 소속 대원들이 대피. 3월 24일, 17대의 버스 호송대가 동구타를 출발하여 994명 이상을 태우고 북부 반란군이 장악한 마을인 이들리브로 대피. 3월 27일 100대의 버스 호송대가 이르빈 회랑을 출발하여 반군이 장악한 북부 이들리브 지방을 향해 출발하여 최소한 6,750명의 반군과 주민들의 탈출하였다.

25) <https://www.dw.com/en/what-are-humanitarian-corridors/a-61030061>

26) Oxford Guidance on the Law Relating to Humanitarian Relief Operations in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Commissioned by the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tober 2016 내용을 정리하였음

27) Civil-Military Coordination Field Handbook(2018)

28) ibid

하고 있으며 인권 조약의 당사국들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해야 한다.²⁹⁾

무력충돌과 다른 폭력 상황에서, 민간인들은 종종 분쟁과 관련된 이유로 살던 곳을 떠나도록 강요당했다. 그들이 집을 떠나서 그들의 나라에 남아 있을 때, 그들을 국내 피난민(IDP)이라고 한다. 그들이 분쟁이나 박해로 인해 국제 국경을 넘어갔을 때 망명 신청자가 되며 망명 신청이 허가되면 그 사람은 난민이다. 국제 난민법(1951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은 난민의 권리와 보호를 다루는 국제법의 일부로서 국제 인권법과 국제 인도법을 보완한다.³⁰⁾

자연재해의 맥락에서 많은 세계적인 그리고 국가의 도구들이 있다. 국제재난대응법(IDRL) 지침은 국제적 구호 및 초기 복구 지원을 국가적으로 촉진하고 규정화하기 위해 정부가 국제적 구호와 더 나은 협조와 질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재난법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2008년 유엔 총회는 3개의 결의안(resolutions 63/139, 63/141, 63/137)을 채택하였으며 국가들이 국제재난대응법 지침을 활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2016년, 국제법 위원회는 재난 발생 시 사람 보호에 대해 해설과 함께 초안 조항을 채택했다.³¹⁾

인도주의 통로는 국제법상 일반적인 용법에서 ‘안전지대’와 ‘보호지대’를 포괄하는 용어의 혼합으로 인해 약간의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종류의 보호 구역은 교전국이나 외부 당사자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들의 일반적인 목적은 민간인들을 격렬한 전투의 전장에서 분리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다른 관련 특징들에 따라, 그들은 각각 다른 법적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호 구역의 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³²⁾

1949년 제네바 협약(GC)과 그 추가 의정서에 포함된 조항들에 정의된 보호구역의 유형에는 병원지대 및 병원지구³³⁾ (hospital zones/localities), 안전 지대

29) ibid

30) ibid

31) ibid

32) Blog of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https://www.ejiltalk.org/the-international-law-of-protected-spaces-and-the-collapse-of-the-humanitarian-corridors-in-ukraine/> The International Law of Protected Spaces and the Collapse of the Humanitarian Corridors in Ukraine

33) Article 23 GC I and Article 14 GC IV

및 지구(safety zones/localities)³⁴, 중립지대(neutralized zones)³⁵, 그리고 비무장 지대(demilitarized zones)³⁶ 등이 있다. 이 구역들은 개념적으로 구별된다. 제네바 제I협약 제23조에서 병원지대 및 병원지구, 제네바 제IV협약 제14조에 병원 및 안전 지대 및 지구, 제네바 협약 제I의정서 제60조에서 규제되는 보호 구역의 범주를 ‘비무장 지대’(DMZ)를 포함하도록 확장하였다. “인도주의 통로”는 국제 인도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³⁷

이 외에도 앞에서 제시한 휴전을 둘러싼 통로, 안전 공간, 인도주의적 접근뿐만 아니라 분쟁의 중지, 정전 등 다양한 용어들과 용어들 사이에 많은 혼란이 있다. 또한 이러한 용어들은 종종 사용에 있어 거의 일관성이 없이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렇듯 법적 정의는 없지만 OCHA는 분쟁의 일시 정지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³⁸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인도주의 통로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에서 인도주의적 물품 및/또는 사람들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당사자가 동의한 구체적인 경로 및 물류 방법”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계된 좁은 길이며, 제한된 시간적 지속 시간(몇 시간 또는 몇 년 동안 짧을 수 있다)을 갖는다. 국제법상 제네바 협약 제I의정서 제60조에서 규제되는 ‘비무장 지대’(DMZ)의 이해 범주이다. 특히 제60조 3항에서 비무장 지대의 기본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34) 레브레니차 안전지대는 교전국 간 합의가 없거나 제한된 공간의 설치, 유지, 치안 유지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임.

35) Article 15 GC IV

36) Article 60 Additional Protocol I (API) to the 1949 GC

37) Blog of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https://www.ejiltalk.org/the-international-law-of-protected-spaces-and-the-collapse-of-the-humanitarian-corridors-in-ukraine/> The International Law of Protected Spaces and the Collapse of the Humanitarian Corridors in Ukraine

38) Oxford Guidance on the Law Relating to Humanitarian Relief Operations in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Commissioned by the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tober 2016

3. 그러한 합의의 대상은 통상적으로 다음의 제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지대로 한다.

가. 모든 전투원과 이동 가능한 무기 및 군사 장비는 철수되었을 것.

나. 고정 군사시설 또는 설비가 절대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다. 당국 또는 주민에 의하여 여하한 적대행위도 행하여지지 아니할 것.

라. 군사적 노력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중지되었을 것 분쟁 당사국은 다. 호에 규정된 조건에 대하여 부여될 해석 및 제4항에 언급된 자가 아닌 자로서 비무장 지대 출입이 허용되는 자들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물론 세부적인 조건은 협상을 통해 조정되어야 하지만, 제네바 협약 제I의정서 제60조는 비무장 지대를 “전투원과 무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 내부에서 어떠한 종류의 적대행위와 군사 활동을 금지하기로 당사자가 상호 동의한 지정된 공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인도주의 통로”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 즉, 인도주의 통로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공간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인도주의 통로는 국제법상 “비무장 지대”가 국제 인도법의 규정과 보호의 대상인 것과 같이 인도주의 통로 또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에 대한 국제 인도법의 규칙은 인도적이고 공평한 성격의 구호 활동과 차별 없이 행해지는 활동에 적용된다.³⁹⁾ 국가는 그들의 영토에서 또는 그들의 효과적인 통제하에 있는 민간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비 국제적 무력충돌에서, 조직된 무장 단체가 영토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분쟁 당사국이 할 수 없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이 민간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책임이 있다.

민간인이 종교적 숭배에 필요한 물건뿐만 아니라 식량, 물, 의료용품, 의류, 침구, 피난처, 난방 연료 및 기타 필수용품 등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주의적이고 공정하며 차별 없이 수행되는 구호 활동의 제안이 이루어진다.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을 하겠다는 제안은 무력충돌 또는 비우호적인 행위 등에서 간섭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민간인이 필수 물자가 불충분하여 인도적이고 공정하며 역차별 없이 구호 활동을 통해 제공할 경우, 그 활동이 수행될 영토의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한 동의는 제멋대로 보류되어서는 안 된다. 비 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서 조직된 무장단체의 효과적인 통제하에 있는 지역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인도적 구호 활동이

39) ibid

이루어지는 경우, 분쟁 당사국이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영토를 통과하지 않고 도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동의를 보류할 명분은 부족하다.

점령지의 민간인 전체 또는 일부가 불충분하게 제공될 경우, 점령 세력으로서 인도적이고 공정한 성격의 구호 활동에 대한 제의에 동의를 보류할 수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분쟁 당사자들과 관련국들에게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 제의에 동의하거나 동의 없이 그러한 활동을 하게 하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일단 동의를 이루어지면, 무력충돌의 당사자들은 그들의 효과적인 통제하에 있는 영토 전체로 인도주의적 구호물자, 장비 및 인력의 신속하고 방해받지 않는 통행을 허용하고 촉진해야 한다. 인도적 구호 요원의 활동은 군사적으로 필수적인 경우에만 제한되거나 그들의 이동이 제한될 수 있다. 무력충돌의 당사자들은 인도주의적 구호물자, 장비, 인력 통과를 위한 기술적 준비를 규정할 수 있다. 행정적인 절차, 형식 및 기술적 준비는 원칙적으로 선의로 적용되며 그들의 성격, 범위 및 영향이 신속한 인도적 구호의 전달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도입과 효과는 임의적이어서는 안 된다.

무력충돌의 당사자들은 물자, 장비, 그리고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의 일부를 구성하는 인력들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인도주의와 관련된 인원, 시설, 자재, 장치 또는 차량에 대해 국제 인도법에 따른 민간인과 민간 물자에 주어지는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한 의도적으로 공격을 지시하는 것은 국제형사재판소 국제 및 비 국제 무력충돌에 관한 법령에 의거 “전쟁 범죄”이다.

비 교전 국가는 점령지의 민간인을 위한 인도주의적 구호물자의 자유로운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 국제 무력 분쟁에서,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이 시작되거나 통과해야 하는 영역이 그 영토에 있는 비 교전 국가들의 동의는 필수적이다. 그러한 동의는 임의로 보류되어서는 안 된다.⁴⁰⁾ 무력충돌의 당사자들 또는 다른 관련국들이 제의에 동의할 의무가 있으나 하지 않을 경우, 인도적 구호를 제안하기 전에 동의를 필요한 국가가 임의로 보류할 경우, 인도적 구호 물자, 장비 및 인력의 신속하고 방해받지 않는 통과를 허용하고 촉진시켜야 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는 국제법상 책임을 진다. 이러한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을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국제법에서 책임을 야기한다.

40) GC IV, 제59조 구호: 1. 집단적 구호, 모든 체약국은 이러한 송부품들의 자유 통과를 허하고 또 그것들의 보호를 보장하여야 한다.

의도적으로 구호물자를 방해하는 것을 포함하여 생존에 필수적인 물건들을 빼앗아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전쟁 범죄(war crime)”이다. 의도적으로 인도적 지원 임무에 관련된 인력, 설비, 자재, 장치 또는 차량에 대한 공격을 지시하는 행위는 민간인과 민간 물자에 주어지는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한 국제 인도법에 따라 “전쟁 범죄(war crime)”이다. 의도적으로 직접 참여하지 않은 개인 민간인과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을 지시하는 것은 “전쟁 범죄(war crime)”이다. 의도적으로 삶의 조건에 대한 가해 행위, 그중에서도 음식과 의료에 대한 접근의 박탈, 일반 시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시행될 경우 초래할 수 있는 계산된 인구의 일부 파괴를 인지한 공격은 “인도에 대한 범죄 (crime against humanity)”이다.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수행하는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이 그 국가의 동의 없이, 그 영공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영토를 이용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이 불법적으로 방해를 받는다고 해도 그 국가의 주권(sovcreignty)과 영토보존(territorial integrity)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정에 의해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이 부과되는 상황에서 국가와 또는 국제기구에 의해 수행되는 그러한 활동은 관련 국가의 동의가 없어도 합법적이다. 단, 예외적으로 국가 또는 국제기구는 다른 대안이 없을 때 극도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물자를 가져다주는 임시 인도주의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한 활동은 위협이나 무력 사용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그것이 실시되는 국가의 영토 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해서는 안된다.

국제 인도법에 따르면, 분쟁 당사자들은 관련된 민간인의 안전이나 군사적 이윤이 요구되지 않는 한 민간인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강제 추방하거나 강제 이송할 수 없다.⁴¹⁾ 즉, 위의 예외와 별개로 위협에 처한 사람들의 이송과 대피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그들의 동의로 수행되어야 한다. 위협 인원의 이송 및 대피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자발적이어야 하며, 가족 단위가 유지되어야 하며, 특히 재산, 목적지, 안전 및 이후 복귀와 관련하여 관련 당사자에 의해 필요한 모든 권한과 보장이 제공되어야 한다.⁴²⁾

41)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of August 12 1949, 제49조 추방, 이송, 철거/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7조 인도에 반한 죄

42) <https://www.icrc.org/en/document/how-humanitarian-corridors-work>, How humanitarian corridors work to help people in conflict zones

IV. 인도주의 통로의 제한사항

우크라이나에서 협상이 이뤄진 휴전이 특히, 마리우폴과 볼노바카에서 거의 즉시 결렬된 것은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한 모스크바의 불성실한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다. 우크라이나의 인도주의 통로에 대한 반복적인 공격은 러시아군이 저지른 전쟁 범죄의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전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제네바협약 제I의정서 제37조 I⁴³⁾에 따라 금지된 배반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인도주의 통로가 악의적으로 제안되고 상대방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군사 전략으로 사용된다면 진실하고 효과적인 인도주의 통로의 전망은 더 이상 실현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 통로는 여전히 위험한 활동이다. 그것들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 인도주의 관련 인원 그리고 관련 교전국을 포함한 주요 위험들이다. 이러한 위험은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활동 이전에 교전 당자들에 의한 통로의 오남용, 호송대 등에 대한 공격 위험, 기타 사고나 일반 장애 등 분쟁 중 과거 맥락과 교훈, 모든 당사자의 효과적인 지휘 체계, 사전에 확인된 대화자 또는 알려진 강력한 통신 채널, 잠재적 외부인의 신원과 스포일러의 신원 확인 등의 분석에 근거하여 평가해야 한다.

인도주의 호송대의 철수 또는 통로의 중단과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비상대비계획을 포함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모든 당사자의 사전 동의 요구는 적절한 위험 관리 전략의 핵심이다. 인도주의 통로 운용 간에는 이미 통로에 있는 사람들의 호송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안전과 물류상 사고의 피해를 감소하는 필요한 완화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인도적 지원 물자와 차량의 안전과 인도적 지원 인력들의 안전과 재 전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통제하고 있는 분쟁 당사자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

인도주의 통로 운용이 완료 후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을 식별하고 예방 및 완화 조치의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한 분석과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통로를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조치와 학대, 자의적 체포 및 실종으로부터 보호를 보장과 통로를 통해 수행되는 인도적 제공과 분배 기간 등을 당사자와 협상을 해야 한다. 인도주

43) 제37조 배신행위금지 1항 (Article 37. 1 (Prohibition of perfidy)) : 적을 배신행위에 의하여 죽이거나 상해를 주거나 포획하는 것은 금지된다. 적으로 하여금 그가 무력충돌시 적용 가능한 국제법 규칙 하의 보호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거나 의무가 있다고 믿게 할 적의 신념을 유발하는 행위로서 그러한 신념을 배신행위 목적의 행위는 배신행위를 구성한다. 하기 행위들은 배신행위의 예이다.

의 통로의 설치에 교전국에게 상당한 이익과 위험성을 준다.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의 대화 유지는 제안된 통로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당사자들의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이익을 평가하고 통로의 인도주의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지원을 구하기 위한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도주의 단체는 협상이나 통로의 실패에 대한 책임의 귀속, 인도주의 의무 위반으로 부터의 관심의 분산 등 당사자들이 지역 및 지역적 수준에서의 도구화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통로의 거부도 또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추가적인 압력을 가함으로써 심리적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통로의 협상을 시도하기 전에 도구화되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로를 보호하고 이를 사용하는 민간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선택사항이 있을까? 특히 진행 중인 영토 분쟁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위기에 즉각적으로 국제적인 직접 개입을 위한 옵션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합의된 조건이 존중되는지 확인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국제조직에 의한 감독이 적절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협정이 비무장 지대의 성격을 잃지 않고 법과 질서를 유지만을 위한 목적으로 평화유지군이나 경찰 요원의 주둔을 허가하는 것이다.⁴⁴⁾

국제 사회 내에서 인도주의 통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러한 보호 구역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계획을 시작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래의 인도주의 통로는 어떤 형태든 국제적 감독 없이는 의존할 수 없다. 만약 당사자들이 보호구역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를 허용하는 조건에 동의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강력한 평화 유지 활동(robust peacekeeping operation)⁴⁵⁾의 형태로 유엔 평화유지군이 이러한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⁴⁶⁾

물론, 이러한 임무를 계획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감의 확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입에 대한 국제법적 정당성과 유엔 시스템의 논의와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44) Blog of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https://www.ejiltalk.org/the-international-law-of-protected-spaces-and-the-collapse-of-the-humanitarian-corridors-in-ukraine/> The International Law of Protected Spaces and the Collapse of the Humanitarian Corridors in Ukraine

45) 유엔헌장 제7장 임무가 최선의 선택은 아니다. 오히려 전통적인 유엔헌장 제6장 평화유지 임무가 인도주의 통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통합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즉, 무장을 하되, 양측사이에 완충장치를 제공하며, 준수 문제를 추적하고 보고한다.

46) ICRC customary international law database, Practice indicates that international supervision is seen as an appropriate method of verifying that the conditions agreed upon are respected. The agreement may authorize the presence of peacekeeping forces or police personnel for the sole purpose of maintaining law and order without the zone losing its demilitarized character.

V. 도전 과제

인도적 개입 법적 및 실천력 강화.

최근 유엔에서는 인도적 개입 또는 보호 책임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민간인의 희생은 유엔의 한계와 함께 무능력함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전 유엔 사무총장 고피야난은 국내 문제라도 대규모 인권침해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UN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의 주도로 “간섭과 국가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The International Committee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라는 전문가 패널은 “간섭”, “개입”이라는 용어 대신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2001)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UN에 제출하게 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⁴⁷⁾

이 보고서⁴⁸⁾에서 R2P로 알려진 보호책임은 국제 사회가 집단 학살, 전쟁 범죄, 인종 청소 및 반인도적 범죄와 같은 대규모 잔학 행위를 중단하는 데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국제 규범이다. 이 개념은 1990년대에 르완다와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자행된 대규모 잔학 행위에 대해 국제 사회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한 대응으로 등장했다. 대량학살,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인종 청소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할 책임은 2005년 UN 세계정상회의 결과 문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후 중요한 글로벌 원칙으로 부상했다.⁴⁹⁾ 이 보고서 138절⁵⁰⁾에서 “국가가 시민들을 보호할 1차적 책임이 있으며” 139절에는 “개별 국가가 주민의 보호에 실패하고 평화적 해결수단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국제 공동체가 이들을 보호할 책임을 가진다”는 것이다.

47) 반기문 재단 블로그 :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bkfoundation&logNo=221899273737&parentCategoryNo=&categoryNo=17&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22. 10. 6. 검색)

48) <https://www.globalr2p.org/what-is-r2p/> (22. 10. 6. 검색) 참조

49)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 문서는 2005년 제60차 유엔 총회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집단 학살,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및 인종 청소로부터 인구를 보호할 책임에 대한 매개변수를 설정한 결의안이다. 2005 world summit Outcome A/RES/60/1 (2005. 10. 24.)

50) 138항에는 각 개별 국가는 집단 학살, 전쟁 범죄, 인종청소 및 반인도적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은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을 통해 선동을 포함하여 그러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수반한다. 우리는 책임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국제 사회는 적절한 경우 국가가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도와야 하며 유엔이 조기 경보 능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009년 1월 유엔 사무총장은 R2P의 세 가지 기둥을 명확히 하는 보호책임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⁵¹⁾. 2009년 7월에 첫 번째 총회에서 보호책임에 대한 토론이 열렸다. 이 토론에서 UN 회원국들은 2005년 약속을 압도적으로 재확인했으며 총회는 사무총장의 보고를 채택하는 결의안⁵²⁾을 채택하였다.

R2P stipulates three pillars of responsibility:

1 PILLAR ONE

Every state has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ts populations from four mass atrocity crimes: genocide, war crimes, crimes against humanity and ethnic cleansing.

2 PILLAR TWO

The wider international community has the responsibility to encourage and assist individual states in meeting that responsibility.

3 PILLAR THREE

If a state is manifestly failing to protect its populatio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be prepared to take appropriate collective action, in a timely and decisive manner and in accordance with the UN Charter.

2009년 이후, 첫 번째로 2018년 6월 총회에서 보호책임에 대한 토론이 개최되었으며 2021년 5월 18일, R2P에 대한 유엔 총회의 연례 토론 이후, 회원국들은 총회는 연례 의제에 R2P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기로 결정하고 사무총장이 해당 주제에 대해 매년 보고하도록 요청하는 “대량학살, 전쟁 범죄, 인종 청소 및 반인도적 범죄를 보호하고 예방할 책임”에 관한 결의안(A/RES/75/277)을 채택하였다.⁵³⁾

이러한 논의는 몇 가지 반대의 논의에 직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UN집단안전보장체제 하의 인도적 개입은 국제적으로 합법적인 것으로 용이되고 있으나 개별 국가의 인도적 개입을 이유로 무력행사는 UN헌장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유엔 1장 2조 7항에는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유엔에게 부여하지 아니하며.....⁵⁴⁾로 국내 불간섭의 원칙과 배치된다. 또한 유엔 헌장 2조 4항⁵⁵⁾의 “무력사용금지의 원칙”과도 위배된다.

하지만 유엔 헌장 7장의 “집단적 안전보장 제도”와 제51조 “자위권(개별적 또는 집단적)”의 근거로 개별 국가의 국내 문제라고 하더라도 무고한 시민이 희생당

51) In January 2009 the UN Secretary-General released a report on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which articulated the three pillars of R2P

52) Resolution A/RES/63/308

53) Resolution 75/277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the prevention of genocide, war crimes, ethnic cleansing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RES/75/277, 2022년은 76차 총회 6. 23~24간 토론 진행.

54) 유엔헌장 2조 7항: Nothing contained in the present Charter shall authorize the United Nations to intervene in matters which are essentially within the domestic jurisdiction of any state or shall require the Members to submit such matters to settlement under the present Charter; but this principle shall not prejudice the application of enforcement measures under Chapter VII.

55) 유엔 헌장 2조 4항: All Members shall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하는 상황에서 인도적 개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리의 주장은 강대국의 무력행사 남용(주관적, 선별적, 자의적), 명확한 국제적 조약이나 관행의 국제법적 의무나 기준 없이 시행된다면 유엔의 역할과 권한은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⁵⁶⁾. 이러한 논의는 국제적 법치주의, 국제기구(유엔)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충분한 논의와 공감의 있어야 할 것이다.⁵⁷⁾

앞에서도 언급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하에 시기와 장소, 규모 (Robust)면에서 제한적으로 분쟁지역에서 인도주의 통로에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엔의 R2P의 개념을 준용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국제 사회가 인도적 개입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쟁 시 민간인 보호가 핵심가치이기 때문이다. 인도주의 통로는 “인도적 개입”보다는 낮은 단계로 분쟁 당사자의 동의하에 제한적, 한시적으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기적절하고 충분히 보호 가능한 방법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 인도법에 따르면 분쟁 당사자는 국경을 넘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여 본질적으로 공정하고 인도적인 구호 활동을 수행하겠다는 제안을 임의로 거부할 수 없다. 사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구호물자를 방해하는 것을 포함한 전쟁 방법으로 민간인의 기아를 이용하는 것은 전쟁 범죄이다. 국제기구는 분쟁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극도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하기 위한 구호물자를 제공하기 위해 일시적인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들은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것들을 취할 때 동의를 보류하는 국가의 영토보전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을 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⁵⁸⁾

국제 인도법 군내 교육 강화

한국전쟁 개전 초기 피난민 속에 북한군 정찰 부대가 섞여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많은 무고한 민간인이 사망하였다. 이는 민간인 속에 북한군이 섞여 있을 경우 폭격이 당연시되거나 피난민 즉, 민간인의 안전보다는 원활한 군사작전을 중시하는 결과이다.

전시 군은 군사작전을 시행함에 있어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 국제 인도법은

56) 2003년 미군 주도 다국적군의 이라크 침공은 국제법상 적법성과 정당성에서 문제가 있음.

57) 국제법상 무력사용금지의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한 고찰,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연구소, 2006, 9월 참조

58) www. reliefweb.int, How humanitarian corridor works to help people in conflict zones 참조

특히 민간인 보호를 주요 가치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얼마나 국제 인도법을 알고 있을까? 제네바 협약에는 체결국은 자국내에 보급하고 군뿐만 아니라 민간교육에도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체약국은 전, 평시를 막론하고 본 협약 전문을 가급적 광범위하게 자국내에 보급시킬 것이며 특히 군 교육계획, 가능하면 민간교육계획에도 본 협약에 관한 학습을 포함시킴으로써 본 협약의 원칙을 전 국민, 특히 군인,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에게 습득시킬 것을 약정한다.

〈제47조 협약의 보급〉⁵⁹⁾

군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4조 전쟁법 준수의 의무 및 시행령 제22조에는 전쟁법 교육을 하게 되어 있다. 국방부 훈령에는 책무와 교육절차, 형식 등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장성급 지휘관은 소속부대 지휘관 대상 연 1회, 장병 대상 연 2회 실시하며 지휘관이나 군법무관 등에 의한 방문 및 작전 중 수시 교육을 하게 되어 있다. 양성교육기관인 사관학교의 경우 약 6~15시간, 보수교육 기관(합참대 전쟁지원법령, 전쟁법(특강)에서는 전쟁법 교육이 없다. 야전부대의 경우 주간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하도록 되어 있다.⁶⁰⁾

이렇듯 우리 군의 전쟁법 교육 현황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전쟁법이 전시 무력분쟁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여 전투원 및 민간인을 필요 이상의 고통과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목적 등을 고려 시 군은 전쟁법의 목적과 전쟁의 목표와 수행방법 등에 대한 기본원칙을 이해하고 전쟁법이 추구하는 인도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군의 전쟁법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 분	양성교육기관	보수교육 기관		야전부대
내 용	필수과목	초군반	전쟁법 핵심내용 / 교관화	지휘자에 의한 반기 1회 집중교육
		고군반	심화 과정	
		육대	사례위주 발표/토의식	
비 고	임관평가	초군/고군반 : 부대 교관 화 육대 : 사례 위주 적용방안		핵심위주

59)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Ⅰ 협약) 제47조, (제Ⅱ 협약) 제48조, (제Ⅲ 협약) 제127조, (제Ⅳ 협약) 제144조에는 공통으로 규정되어 있음.

60) 대한민국 군체제에서의 국제 인도법 현황과 전망, 육군사관학교 교수 김현수, 2021.11.19.(금), 제40회 국제인도법 세미나

민군작전 인식전환 및 교리 반영

우리 군의 합동교리 10-2 합동안정화작전 교리에는 민군작전을 “군 부대가 주둔하거나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군사작전의 성공적 수행을 보장하고, 국가정책 실현을 위해 실시하는 군사활동으로 이러한 활동으로 군부대와 정부, 비정부기구 및 주민과의 관계를 구축, 유지 및 확대하는 지휘관 중심의 제반 군사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군의 합동교범 JP 3-57 민군작전에서 “민군작전(民軍作戰, CMO)은 지정된 지역 또는 주둔국 내에서 안정을 회복하거나 유지와 관련된 목표 달성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군부대와 토착민 그리고 기관(IPI) 간의 관계를 수립, 유지, 영향 또는 확대하는 지정된 민사 또는 군부대에 의해 수행되는 지휘관의 활동이다.”로 정의하고 있다. 민군작전은 민간행정, 민간인 및 자원 관리, 외부의 인도적 지원, 국가 원조 및 민간 정보 관리 지원을 위한 민과 군의 활동을 통합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민군작전본부는 중립성 유지를 원하는 단체를 위한 합동군 장을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다. 이는 NGO, IGO 및 민간 부문으로부터의 지원을 접수, 검증 및 조정한다. 또한 합동군의 활동에 이러한 요청을 전달한다.

“군사작전의 성공적 수행을 보장하고, 국가정책 실현을 위해 실시하는 군사활동”의 개념은 자칫 민간인을 작전의 방해요소로 인식할 수 있으며 정부, 비정부기구와의 관계를 구축, 유지, 확대라는 개념에 비해 세부 과업과 과제에는 포함하고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의 안전확립 과업⁶¹⁾의 과제인 “피난민 및 주민 이동통제” 과제는 군사작전의 성공보장을 위한 “통제”의 개념에서 벗어나 “민간인의 안전확보 및 지원”의 개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군부대 및 민군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에는 정부, 비정부기구 및 주민과의 관계를 구축, 유지 및 확대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민군작전본부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 민과 군의 업무협조 및 조정은 군사작전뿐만 아니라 민간인 보호에서 아주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유엔기구, 적십자사와 같은 중립적인 국제기구와의 협조 및 조정은 군사작전과 민간인 보호를 위해 필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민군작전본부에는 유엔,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기타 민간단체 등과의 협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하다. 민사부대가 예비전력 위주로 편성되는 점을 고려 시 이러한 인원들은 국제업무 유경험자와 국제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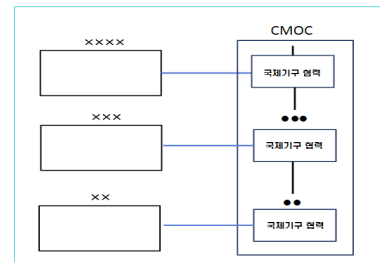
61) 육군 야전교범 3-9 민군작전(육군본부)에서 민군작전 과업을 민간의 안전확립, 필수 공공서비스 복구, 자원관리 및 지원, 정부 및 민간 지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원이 필요하다. 사단급 이상 부대에는 이러한 조직을 예비전력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평소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인원을 동원지정 시 우선 편성하여 동원훈련 시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들의 교육에는 유엔의 과업 중 모든 인원들이 수행해야 할 “공통과업(Cross Cutting Themastic Tasks)”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여성 및 아동 보호, 민간인 보호, 분쟁관련 성 폭행 예방과 민군협력 등의 교육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유관기관 및 다국적군 작전, 합동작전 교리에도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위한 교리 발전이 필요하다. 현재 교리상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연구를 더욱 활발히 하고 유관기관, 다국적군 및 합동작전 간 협조를 제도화하고 통합하며 표준절차를 위한 교리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평화작전관련 전문분석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에 평화작전 전문분석을 위해 연구처 인원 보강이 시급하다.⁶²⁾

민군작전 협조반 (CMOC) 내 국제협력 조직 반영

군도 이제는 국제기구에 대한 시선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너무 군사작전의 방해에만 초점을 두다 보면 국제기구에 대한 인지적 시각이 편향될 우려가 있다. 이제는 국제기구와 함께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국제기구는 군사작전의 방해요소가 아닌 서로 협력하고 협조 관계로 인지하고 통합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협조 기구와 전문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작전사급 부터 사단급까지 민군작전본부내에 이러한 조직을 편성하여 군사작전과 인도적 지원을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 ‘아에로로즈비드카’는 드론을 활용한 공격으로 러시아군의 진군을 저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은 혁혁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에로로즈비드카’ 부대는 우크라이나에서 친서방 세력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던 2014년 처음 결성됐다. 2019년 한때 해체됐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커지던 지난해 10월 재결성됐다. IT 기술 전문가와 드론 애호가들(동호회)로 구성된 이들은 드론으로 폭발물을 투하하기도 하고 첨단 광학 센서

62) 현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연구처는 3명으로 연구기능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지역단위 연구관 5명의 추가 편성이 필요하다.

등을 활용해 적의 위치를 정확하게 포착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우리는 2019년 국가 지도집에 따르면 인천시 10개, 서울시 6개, 부산시 3개 등 총 19개의 국제기구 본부 및 사무국, 17개의 국제기구 지부를 유치하였다. (2018년 12월 기준) 이외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유엔기구들⁶³⁾, KOICA 등이 있다. 민간 간 협조는 분쟁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을 전시에 국제기구 협력조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평소 업무를 국제기구 협력 조직으로 군 부대에 편성하여 교육, 경험, 노하우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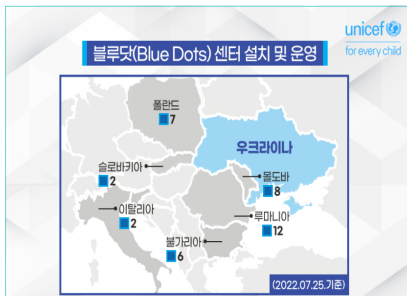
인도주의 물자 준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니세프는 우크라이나의 어린이 사망자는 348명, 어린이 부상자는 560명, 민간인 사망자는 5,237명, 부상자는 7,035명, 난민은 616만 명 이상(누적 992만 명 이상)이며, 어린이와 여성이 전체의 90% 이상이라고 하였다.

	민간인	어린이
사상자	12,272명	908명
사망자	5,237명	348명
부상자	7,035명	560명

(출처: UNICEF, 2022.07.26)
 우크라이나 피란민: 1,243만 명 이상
 우크라이나 국내실향민: 627만 명 이상
 우크라이나 난민: 516만 명 이상
 (출처: UNHCR, 2022.07.26)

64). UNICEF는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몰도바, 슬로바키아 등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 13개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긴급구호물품과 여성과 어린이



를 위한 필수 보건 용품, 식수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피란 중인 가족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홀로 다니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할 위한 블루닷 센터를 운영하였다. 현재 블루닷 (Blue Dots) 센터를 루마니아, 몰도바, 폴란드, 불가리아, 이탈리아, 슬로바키아에 37개 설치 (2022.08.01. 기준) 및 운영 중이며,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블루닷 센터는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한 어린이와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는 허브이다. 전쟁이나 생존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헤어진 가족을 연결하며, 법률 상담, 의료 및 심리 치료 등을 진행한다.⁶⁵⁾

63) UNFPA 서울연락사무소, WHO 아시아 환경보건센터, UNODC Coe 아·태범죄 통계협력세널, UNITAR 제구 국제연수센터 등이 있다. 한국주재 유엔사무소 (22. 2. 5. 검색)(22. 8. 1. 기준)

64) <https://www.unicef.or.kr/what-we-do/news/154840> (22. 8. 29.검색) 이하 내용은 유니세프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65) ibid

또한 홀로 다니는 어린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도우며, 휴식과 놀이를 즐기면서 전쟁의 두려움을 잊도록 돕는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이동형 아동보호팀 (63개),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정신건강 및 심리치료 서비스, 가정 위탁, 주요 지역 산부인과에 의료용품 지원, 백신, WASH(Water, Sanitation and Hygiene) 물품, 아동용 위생 키트, 기저귀, 식수, 액화 염소, 교육 물품, 교사지원, 온라인 학교 운영, 현금지원, 유아 발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지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훈을 얻어 한반도에서 유사시 우리 정부도 피난민이나 실향민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물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인도주의 통로의 남북 간 적용

파키스탄은 국경분쟁을 겪고 있지만 이슬람, 힌두교 종교 성지를 평시에도 오갈 수 있도록 “평화 통로”(People to People Contact/Religious Tourism (Kartarpur Corridor: Indian Sikhs visit to Pak)⁶⁶)를 운용하고 있으며 “평화 철도, DMZ Ceremony(Initiative of Peace Train/Ceremonial Parade on DMZ(Samjotha Express / Wagha Ceremony))⁶⁷ 등 교류협력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인도주의 통로는 평시 남북 간 교착된 상황에서도 개념을 준용할 수도 있다. 남북 간 “평화 통로” 또는 “경제협력 지대”, “물류 통로(시베리아 철도 연결)” 등 지상, 해상, 공중과 공공외교, 군사외교, 사람과 사람 간 접촉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적용개념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 비무장 지대를 “남북 및 국제 교류협력지대”로 설정하여 남북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등을 유치하여 “완충지대”를 넘어 “평화지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VI. 맺음말

무너진 건물과 병원, 눈물 흘리는 아이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뼈만 앙상하니 남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분쟁의 모습이다. 지구촌의

66) 2022년 평창평화포럼 파키스탄 무관 Colonel Changez Zafar, Pakistan Army 토의 자료

67) ibid

끊임없는 분쟁과 내전으로 무고한 많은 민간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 유엔평화유지 활동은 불가피하다. 그동안 유엔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해 도모해 왔으나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여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가 애써 지켜온 가치가 강대국 또는 거짓 포장된 논리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침략행위를 평화유지군이라고 포장한다.

국제 사회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제법적 기준과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 전투원과 전투원이 아닌 자, 즉 민간인으로 이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국제 인도법적인 관점이다. 전시에 민간인은 보호의 대상으로 보장한 것이다. 하지만 분쟁은 이러한 규범을 무시하고 오히려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전술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중 부차 지역 및 여러 도시에서 발견된 처형 형식으로 사망한 민간인이나 신체 일부가 잘린 민간인, 아동에 대한 고문 등 민간인에 대해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거나 신체를 해치는 행위, 민간병원, 민간주거지, 한 도시를 무차별 폭격을 하였다.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는 이를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중대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분쟁으로부터 무고한 민간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평화유지활동 또한 무력사용이 요구되는 환경에 접하고 있다. 전쟁 중 민간인이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인도주의 통로(Humanitarian Corridor)의 종착지를 러시아로 하거나 주민을 강제 이동시키고 합의된 통로에 대한 공격을 가했다. 국제사회의 집단안보체제는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인도주의 통로(Humanitarian Corridor)를 통해 국제사회가 규정한 규범의 실행력을 높이고 인도적 개입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기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국제 사회의 무기력함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유엔이 2차 세계대전의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창설됐으나 또 다시 그런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시 국제 사회의 집단안보체제와 국제기구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공감의 필요가 있다.

우리 또한 국제 사회의 분쟁을 통해 교훈을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훈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참 고 문 헌

- 2022년 평창평화포럼 파키스탄 무관 Colonel Changez Zafar, Pakistan Army 토의 자료
- <https://www.unicef.or.kr/what-we-do/news/154840> ('22. 8. 29 검색)
- 한국주재 유엔사무소('22. 2. 5. 검색)('22. 8. 1. 기준).
- 육군 야전교범 3-9 민군작전(육군본부)
- 대한민국 군체제에서의 국제 인도법 현황과 전망, 육군사관학교 교수 김현수, 2021. 11. 19.(금), 제40회 국제인도법 세미나
-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 I 협약) (제 II 협약) (제 III 협약) (제 IV 협약)
- [www. reliefweb.int](http://www.reliefweb.int), How humanitarian corridor works to help people in conflict zones
- Resolution A/RES/63/308
- Resolution 75/277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the prevention of genocide, war crimes, ethnic cleansing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RES/75/277
- 반기문 재단 블로그 :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bkmfoundation&logNo=221899273737 &parentCategoryNo=&categoryNo=17&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bkmfoundation&logNo=221899273737&parentCategoryNo=&categoryNo=17&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22. 10. 6. 검색)
- <https://www.globalr2p.org/what-is-r2p/> ('22. 10. 6. 검색)
- 2005 world summit Outcome A/RES/60/1 (2005. 10. 24.),
- Blog of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https://www.ejiltalk.org/the-international-law-of-protected-spaces-and-the-collapse-of-the-humanitarian-corridors-in-ukraine/> The International Law of Protected Spaces and the Collapse of the Humanitarian Corridors in Ukraine
- <https://www.icrc.org/en/document/how-humanitarian-corridors-work>, How humanitarian corridors work to help people in conflict zones
- Oxford Guidance on the Law Relating to Humanitarian Relief Operations in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Commissioned by the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tober 2016
- Civil-Military Coordination Field Handbook(2018)

- <https://www.dw.com/en/what-are-humanitarian-corridors/a-61030061>
- Resolution 2642 (2022) 2. Decides to extend the decisions in paragraphs 2 and 3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165 (2014), for a period of six months, that is, until 10 January 2023, only for the border crossing at Bab al-Hawa, with a further extension of an additional six months, that is, until 10 July 2023,
- NORTHWEST SYRIA, United Nations cross-border operations from Türkiye to Syria, As of 31 July 2022, www.unocha.org/syria
- <https://www.icrc.org/en/document/how-humanitarian-corridors-work>, How humanitarian corridors work to help people in conflict zones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 reliefweb.int
- <https://encyclopedia.ushmm.org/content/en/article/kindertransport-1938-40>, Holocaust Encyclopedia
- SCRs 824 and 836 established the ‘safe areas’ of Sarajevo, Tuzla, Zepa, Gorazde, Bihac and Srebrenica.
- <https://www.icrc.org/en/document/how-humanitarian-corridors-work>, How humanitarian corridors work to help people in conflict zones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 <https://brill.com/view/book/9789004431140/BP000044.xml?language=en&body=fullhtml-43184>, Humanitarian Corridor 저자: Sophia Hoffmann
- UNGA Res 46/182, Strengthening of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emergency assistance of the United Nations.
- UN General Assembly (GA) resolution 45/100 1990. 12. 14.
- <https://247newsagency.com/top-news/81919.html>, Russiaand Ukraine | “Completely immoral”: Kiev’s response to Moscow’sproposed humanitarian corridors into Russian territory

유엔 PKO활동의 삼각파트너십(TPP) 및 역량협력체계(LCM) 강화

Reinforcement of Triangular Partnership Program(TPP)
and Light Coordination Mechanism (LCM)
of U.N. Peace Keeping Operation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 교수 박상중
Park, Sangj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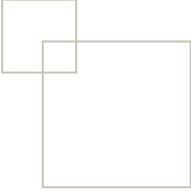


국문초록

유엔 PKO활동은 4차산업혁명 첨단기술의 발달, 코로나19 팬데믹 등 신안보위협이 대두, 인구절벽 도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기여 다변화 등으로 파트너십을 통한 기여의 다변화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선진국은 재정지원, 장비·물자 공여, 기술지원 등을 통한 참여를 선호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에서는 현장 수요에 따른 특수임무 맞춤형 병력 제공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엔의 평화유지구상(A4P)과 PKO활동의 기여 다변화와 연계하여 파트너십을 활용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2021년 서울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성과를 살펴보고, 유엔의 평화유지 디지털전환전략과 삼각파트너십(TTP), 역량협력체계(LCM) 등 협력방안에 대한 추진경과를 분석하여 한국의 유엔 PKO활동 발전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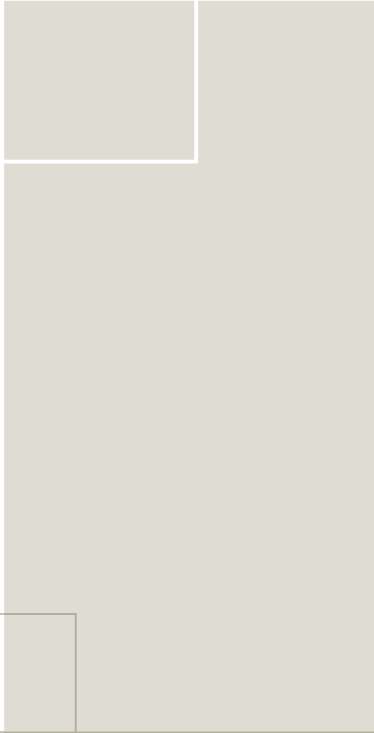
2021년 서울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아시아에서 개최된 최초의 회의로 코로나19 상황과 연계하여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미국, 프랑스,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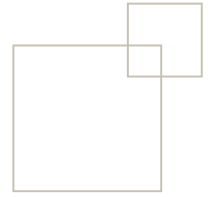


일본 등 선진국은 4차산업혁명 첨단기술과 연계하여 장비·물자의 지원과 기술교육 위주의 PKO활동 기여공약을 제시하였고, 개발도상국은 유엔의 소요를 반영하여 특수임무부대 파견, 훈련강화 등에 대한 기여다변화를 제안하였다.

유엔은 PKO활동의 재원의 부족과 회원국의 기여의 다변화를 고려하여, 디지털 전환전략과 TTP, LCM 등을 통한 협력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엔의 주도적 역할보다는 다차원임무단의 현장소요에 따른 회원국의 상호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PKO 활동은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감축, 국내의 파병반대 갈등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병력 위주의 참여를 탈피하여 장비·물자 공여, 4차산업혁명의 첨단기술 지원 등 선진국형 기여 다변화로 발전하여야 한다.

주제어: 유엔 평화유지 디지털전환전략, 삼각파트너십(TTP), 역량협력체계(LCM), 4차산업혁명, UN 다차원임무단, 평화유지구상(A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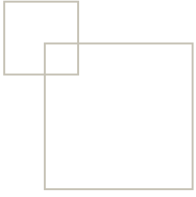


ABSTRACT

Demand for diversification of contributions through partnerships is increasing for UN PKO activities due to the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ie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emergence of new security threat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the advent of a population cliff, and the diversification of contributions from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Developed countries prefer to participate through financial support, provision of equipment and materials, and technical assistance. Developing countries are also advancing the provision of troops tailored to special missions according to field demand.

This article is to propose a development plan using partnerships in connection with the UN Action for Peace Initiative (A4P) and the diversification of contributions from PKO activities. First of all, the achievements of the 2021 Seoul UN Peacekeeping Ministerial is to be reviewed. It analyzes the progress of cooperation measures such as Strategy for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UN Peacekeeping, Triangular Partnership Program (TTP), and Light Coordination Mechanism (LCM). Finally, Republic of Korea's development plan for UN PKO activities will be proposed.

The 2021 Seoul UN Peacekeeping Ministerial was the first meeting held in Asia and was held as a video conference due to the COVID-19 pandemic.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France, Germany, and Japan have proposed contributions to PKO activities focused on equipment and



materials support and technical training in connection with the advanced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eveloping countries have also suggested to diversify their contributions, such as sending special task forces and providing intensive training, according to the local needs of the UN missions.

Considering the lack of financial resources for PKO activities and the diversification of member countries' contributions, the United Nations is promoting the Strategy for the Digital Transformation and measures to strengthen cooperation through TTP and LCM. In particular, the UN emphasizes the mutual cooperation of member states rather than the UN's leading role according to the on-site requirements of the multidimensional missions. In conclusion, ROK's PKO activities need to break away from troop-centered participation in order to overcome troop reduction due to the population cliff and conflicts the oversea dispatch of the ROK Armed Forces. ROK, like developed countries, is also moving toward diversified contributions such as donating equipment and materials and supporting cutting-edge technologies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Key word: Strategy for the Digital Transformation, Triangular Partnership Program (TTP), Light Coordination Mechanism (LCM), 4th Industrial Revolution, UN Multidimensional Missions, Action for Peace (A4P)

유엔 PKO활동의 삼각파트너십(TPP) 및 역량협력체계(LCM) 강화

Reinforcement of Triangular Partnership Program(TPP) and Light
Coordination Mechanism (LCM) of U.N. Peace Keeping Operation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 교수 박상중

Park, Sangjung

I. PKO활동 협력의 새로운 지평선에서

코로나19 팬데믹, 4차산업혁명 첨단기술의 발전, 급격한 인구절벽 등으로 인간 존중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감염병, 이상기온, 재해재난 등 비전통적 신안보위협이 대두되면서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2020년 10월 이후 3년째 지속하고 있는 COVID-19 팬데믹으로 국가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인력, 예산, 물자, 장비 등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평화유지활동(Peace Keeping Operation, PKO / 이후 PKO활동)에서도 신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한정된 자원을 보다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다변화 안보환경에서 평화유지활동의 효율화와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유엔평화활동(UN Peace Operation)은 내전, 테러, 감염병 등 외부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에, 예산과 병력 제한은 심화되고 있어서 다차원·복합적 임무로의 진화가 요구되고 있다. PKO활동은 정

전감시, 모니터링 위주의 전통적 영역을 뛰어넘어 분쟁예방, 평화조성, 평화유지, 평화강제, 평화구축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00년 이후 복합임무 수행이 가능한 다차원임무단(Multidimensional Missions)이 창설되어 2021년 기준으로 총 12개 임무단 약 85,200명이 122개국에서 평화구축(Peacebuilding) 등 다양한 유엔 안보리 위임명령(UN Mandate)을 수행하고 있다.¹⁾

유엔은 평화유지활동의 내·외적 도전요소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평화유지구상(Action for Peace, A4P)’과 이행전략을 제시하여 회원국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PKO활동에 4차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디지털전환전략’을 발표하여 유엔 차원의 혁신을 강화하고 있다. PKO활동은 선진국은 재정 기여, 개발도상국은 병력 기여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들어 국제사회의 변화된 요구에 따라 기술, 자산, 훈련 등으로 기여 분야가 다변화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급변하는 신안보환경에서 4차산업혁명의 첨단기술과 연계하여 유엔의 평화유지 디지털전환전력과 연계하여 삼각파트너십사업(Triangular Partnership Programme, TPP / 이후 삼각파트너십), 역량협력체계(Light Coordination Mechanism, LCM) 등 협력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성과

1. 주최국 한국의 기여공약

지난해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개최한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서 PKO활동의 선도국으로서 자산 공여, 공병·지뢰제거 훈련지원, 의무지원팀 파견, 스마트캠프 시범사업 추진, 경찰 추가 파견, 여성 PKO 역량 강화 등 6대 기여공약을 제시하였다.

먼저, 유엔의 긴급소요 요청에 따라 한국은 아프리카 다차원임무단의 헬기부대 창설을 위해 군용 500MD 헬기 16대를 공여하고 ‘유엔 평화유지 디지털전환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공약하였다. 헬기 공여는 헬기를 직접 운용할 국가와

1) 12개 다차원임무단: 아프리카(6), 중동(3), 유럽(2), 아시아(1)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유엔의 삼각파트너십 발전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케냐 등 병력공여국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유엔 헬기부대 창설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국가에 헬기 정비와 운용 교육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모범적인 협력 사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의 헬기 자산 공여와 파트너 국가의 운용 경험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경우 평화유지요원의 안전보장과 작전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한국은 공병부대 운용의 풍부한 경험을 유엔 회원국들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 한국, 병력공여국 간 삼각파트너십을 구축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국가를 대상으로 공병 장비와 교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한국은 다차원임무단의 의료와 방역 역량 제고를 위해 2018년 말리에 레벨2 병원을 설립한 바 있고, 추가하여 남수단 임무단에 의료지원팀을 추가로 파견하여 PKO 요원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에티오피아 의료훈련센터에 훈련교관을 파견해 전문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넷째, 한국은 경찰의 우수한 능력을 유엔 범죄 예방과 사이버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경찰 PKO요원도 추가로 파견하고 사이버 범죄수사 전문가도 새롭게 파견해 관련 활동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유엔 경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아프리카 지역 경찰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다섯째, 여성 PKO 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의 PKO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 장교를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주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평화유지신탁기금으로 100만 달러를 추가 배정하여 유엔의 스마트캠프, 사상자추적시스템, 디지털전환전략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 선진국의 PKO활동 기여 다변화

유엔은 유엔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이 축소되고 회원국의 재정지원도 지속적으로 감소되면서 PKO활동의 혁신을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선진국은 기술, 훈련, 자산 등을 활용한 기여 다변화가 추진되고 있다.²⁾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 유엔 평화유지 정상회의에서 유엔의 기술력

2) 주요 국가들의 PKO활동 기여 추세는 유엔 PKO활동의 최대 규모이자 최고위급 협의체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서 각국 대표의 기여공약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21년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서울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제4차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United Nations Peacekeeping Ministerial)에서 각국에서 발표한 기여공약을 제시하였다.

향상을 지원하고 기술공여 선도국이 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 선언한 이후, 기술과 자산, 훈련 기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PKO활동에 필요한 막대한 장비를 다차원임무단을 통하여 병력 파견 국가에 공여하고 장비 운용 및 정비기술,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장비지원 분야를 살펴보면, ① 항공자산은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르완다에 지원하고, ② 방호용 장갑차는 우루과이,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등에 지원하며, ③ 응급처치키트는 코트디부아르, 베냉 등에 지원하고 있다. 둘째 병력 공여국에 대한 훈련지원 분야를 살펴보면, ① 훈련시설은 네덜란드와 협력하여 부르키나파소와 니제르에 구축하고, ② PKO훈련센터 확장은 르완다, 카자흐스탄, 모로코에 실시할 계획이며, ③ 평화유지 경찰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경찰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과정 개최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지원 분야를 살펴보면, 에너지효율 제고와 탄소감축을 위해 하이브리드발전기 배치 시범사업 등을 지원하며, 허위정보대응 전문가 등 파견을 통해 기술적 자문을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유엔 평화유지활동 6대 재정기여국이자 말리, 콩고 등 5개 임무단에 병력을 600명 이상 파견하고 있다. 추가하여 아프리카·남미·아시아에 8개 PKO 훈련센터를 지원하는 등 병력기여국 대상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2021년에는 10,000명 이상의 아프리카 병력 훈련을 지원하였으며, 불어사용 장교를 대상으로 장교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드론 등 신기술 훈련도 지속하고 있고, 탄소감축을 위한 유엔의 노력과 연계하여 기후변화 관련 군부대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유엔의 7대 재정기여국으로 유엔말리임무단(MINUSMA)에 2024년 6월까지 헬기를 제공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기술·의료역량 관련 정신건강전략개발을 지원하며, 정보작전 관련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과 여성·평화·안보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등 각종 기술 및 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본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병력공여국에 대한 훈련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5년 유엔과 함께 삼각파트너십을 추진한 이래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베트남 공병훈련과 우간다 엔테베 PKO센터 의료훈련에 중점을 두고 TTP를 추진해 왔으며, 향후에도 230명의 훈련교관을 파견하여 공병·의무 훈련교관 양성프로그램을 통해 360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관리과정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의료훈련과정을 개발하는 한편, 전자임상보고시스템·기록시스템 개발을 위해 재정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일본은 부대파병 없이 개인파병 4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하여 공군 수송부대 파견을 위해 PCRS([Peacekeeping](#)

Capability Readiness System)³⁾에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공병교육에 있어서도 IED(Improvised Explosive Device, 급조폭발물) 대응훈련 등 현장 맞춤형 교육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노르웨이는 4차 산업혁명의 확장현실(Extended Reality) 기술을 활용한 훈련 시스템을 제공하고, 휴대폰의 위치기반시스템을 활용하여 임무지역 내 폭력 사태 위치 파악 시스템을 제공하는 등 기술 기여에 앞장서고 있으며, 네덜란드도 기술 및 의료훈련 기여를 강화하여 디지털 조기경보, 데이터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기술 활용 관련 훈련을 지원하고, 원격의료·응급처치·의무후송·정신건강 관리 등 의료 지원 및 MINUSMA 임무단에 수송기 순환 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는 유엔레바논임무단(UNIFIL) 훈련 지원 등 기여 공약을 추진 중이며, 향후 급조폭발물 대응훈련과 정신건강 관리, 치료 등 의료분야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모빌리티와 관련하여 휴대용 배터리, 하이브리드 전력 설비, 이동형 시설 등 다양한 기술 지원 제공으로 기여분야를 확대할 예정이다. 인도는 3대 병력기여국인 동시에 기술과 의료 분야 강점을 다차원임무단의 안전을 위해 유엔과 평화유지 기술협력 관련 MOU를 체결하고, PKO활동 기술역량 강화에 160만 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평화유지요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기여를 지속하는 등 기여의 다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3. 병력공여국의 부대 파병 추세

재정기여도가 높은 선진국들이 유엔 PKO활동에 필요한 훈련, 기술, 자산 공여 등으로 기여를 다변화하고 있는 한편, 병력기여도가 높은 동남아, 아프리카 등 국가들은 부대파병에 있어 유엔의 소요를 반영한 특수임무부대 파견, 관련 훈련 강화 등으로 기여를 다변화하고 있다.

먼저, 방글라데시는 세계 1위의 PKO 파병국으로서 최근 여성의 PKO활동 참

3) PCRS는 평화유지역량준비체계로서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 Level 1: 공약사항이 결함 없이 접수되어 PCRS에 등록된 상태
- Level 2: 공약사항에 대한 AAV가 성공적으로 실시되어 전개가능하다고 판정된 상태
- Level 3: 공약으로 제시한 특정·표준장비와 인원이 유엔의 군·경찰 부대요구서(Statement of UNit Requirement, SUR)에 맞게 준비된 상태
- RDL(Rapid Deployment Level): 유엔사무국의 공식요청이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다차원임무단의 현장으로 신속하게 부대전개가 가능한 상태

여 확대, 성기반 폭력 대응 강화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파병부대도 경찰특수기동대 파견, 무인기·항공수송·항공의무후송·정찰부대 등 항공자산 파견 등으로 다변화하고, 남수단 태양광패널 무상공여 등 PKO활동의 기여도를 높여가고 있다.

르완다는 2021년 6월에 제4차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위한 제3차 준비회의를 공동주최하여 유엔 A4P 진전에 주력하고 있다. 향후 기술 및 훈련 중심 공여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드론 4대(ISR⁴) 능력 탑재)와 항공 앰블런스 2대(CASEVAC⁵) 장비 탑재)를 공여하고, 중앙아프리카임무단(MINUSCA) 레벨2급 병원에 간이 수술 지원이 가능한 의료 인력 70명 파견을 지원하며, 르완다 훈련센터(Center of Excellence)에 민간인 보호·아동 보호와 여성·평화·안보(Woman, Peace and Security / WPS) 관련 훈련을 제공할 것이다.

페루는 특수임무부대 파견에 주력할 예정으로, 보병중대를 신속전개부대로 파견하여 2022년 상반기 중 200명을 배치할 예정이며, 중앙아프리카임무단(MINUSCA)에 폭발물처리(Explosive Ordnance Disposal, EOD) 전문인력 14명을 파견하는 등 전문 분야의 부대파병을 추진할 예정이다. 멕시코는 그간 참모장교, 군 감시단 파견을 점차 확대해 왔으며 여성 참여율 36%를 달성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는데 향후 첨단 기술을 통한 기여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감시·정찰용 무인 항공기(Unmanned Aircraft) 2대를 지원하고 첫 부대파병으로 공병 중대 파병도 추진한다.

몽골은 2002년부터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며 콩고에 2개의 군사감시단을 파견해 왔는데 향후 훈련과 역량강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2022년 10월부터 신속전개부대인 공병 중대를 파견하고, 이동형 수술 역량을 갖춘 레벨2급 야전병원을 지원하며 신규 파견부대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 등 환경 보호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평화지원 국제연구소(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를 개소하고 여성의 평화유지활동참여 관련 국제회의도 개최하는 등 기여 다변화를 계획 중이다.

이집트는 2개의 평화유지센터(Cairo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 Cairo Training Center for PKO)를 통해 평화유지요원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평화구축을 위한 통합적 훈련 시스템 발전에 노력 중이다. 향후 특수임무부대 파견, 훈련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기계화보병 1개 대대, 공병 중대와 경찰전문부대(FPU), 그리고 중앙아프리카임무단(MINUSCA)에 2개 신속전개부대를 파견하고 급조폭발물 탐지 및 처리를 위한 이동형 훈련팀도 파견할 예정이다. 카이로 센

4) 정보·정찰·감시(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

5) 부상자 후송(Casualty evacuation, CASEVAC)

터에서 평화유지 관련 국내·지역 훈련을 지원하고 TPP 등 신규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동참할 예정이다.

튀니지는 그간 **물류수송(Logistics)**, 의무후송, 특수 헬리콥터 부대 파견 등 기여해 왔는데, 향후 아프리카임무단에 2개 신속전개부대를 배치하고 평화유지요원 훈련을 위한 센터 설립을 통해 훈련을 제공할 계획으로 재정 기여를 희망하는 국가와의 협력을 추진코자 한다. 네팔은 1958년 이래 PKO활동에 기여해 온 최대 파병국 중 하나로서 신속전개부대 10,000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기동타격대·경찰·통신부대 등 유엔이 필요로 하는 특수분야 파병이 가능하도록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Ⅲ. 디지털전환전략 추진 및 PKO활동 협력강화

1. 유엔 PKO활동의 새로운 도전

유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이며, 대부분의 유엔활동은 PKO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유엔헌장은 유엔이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전쟁 방지 등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보리에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의 일차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PKO활동은 유엔의 가장 가시적인 활동으로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다자주의체제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쟁관리 수단이다. PKO활동은 유엔의 핵심 기능으로서 유엔 안보리나 총회 결의에 따라 적대행위가 종식되어 평화회복 과정에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UN 주도로 시행하는 정전감시, 무장해제, 분쟁재발 방지, 치안유지, 전후복구 등이다. 또한, PKO활동은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분쟁지역 당사자들의 동의에 따라 이해관계가 없는 회원국이 유엔 사무총장의 요청을 받아 자발적으로 군인과 민간인을 파견하여 평화적으로 분쟁을 수습해 나가는 활동이다. 유엔의 PKO 임무단은 대부분 분쟁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분쟁지역은 대량 학살과 난민 발생, 빈곤과 기아 등 인도주의적 문제부터 기후변화와 테러 위협까지 복합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분쟁의 유형이 더욱 복잡해지고 다변화됨에 따라 국제분쟁은 유엔 등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때 효과적인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 다수의 회원국이 분쟁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유엔 PKO활동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2000년대에 들어서 정전감시 등 분쟁의 종식을 위한 기존의 PKO활동을 넘어서 분쟁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함으로써 항구적 평화와 지속적 개발을 구축하기 위한 평화구축(Peacebuilding) 개념이 등장하였다. 분쟁국의 필요를 환기시키고 지속적인 평화(Sustaining Peace)와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공여국을 포함한 회원국 상호 협의를 담당할 평화구축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 PBC)가 2005년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산하 자문기구로 창설되었다. PBC는 PKO활동을 논의하는 유엔 특별위원회(C-34)와는 별도로 평화구축 현안을 담당한다.

PKO활동 임무 수행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반면에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 규모는 축소되고 있다. 2014년에는 16개 임무단 약 125,000명의 평화유지요원과 연간 예산 80억 불로 역대 최대 규모였으나, 2017~2018년 3개 임무단의 활동종료에 따라 인력과 예산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다. 2018년 평화유지요원은 10만 명, 예산은 66.9억 불로 감소하였으며, 2021년 기준으로 12개 임무단 평화유지요원 약85,200명, 예산 62.2억 불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는 유엔과 회원국에게 PKO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유엔은 PKO활동 인력의 안전 위협, 임무의 다각화, 재원의 제한 등 작전환경 및 수행여건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2000년 브라히미 보고서, 2015년 HIPPO(High-Level Independent Panel on Peace Operations) 보고서, 2017년 12월 CRUZ 보고서(Improving Security of United Nations Peacekeepers) 등을 통하여 임무수행 방식의 변화를 모색하여 왔다.⁶⁾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2018년 3월 평화유지활동의 역량강화와 효과개선을 위해 A4P를 제안하고 8월 ‘공동 공약선언(Declaration of Shared Commitments)’을 통해 ① 분쟁의 정치적 해결, ② 여성·평화·안보, ③ 민간인 보호, ④ PKO요원의 안전, ⑤ 임무수행능력, ⑥ 평화의 지속성, ⑦ 파트너십, ⑧ 행동강령 준수 등 8대 임무를 발표하였다. 또한, 2021년 3월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보다 강력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PKO활동을 구축하기 위해 항공자산 기여, 파트너십 구축, 책임성 강화, 여성 참여 확대 등을 추가하여 ‘평화유지구상 플러스(A4P+)’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주제인 파트너십(Partnerships)과 관련하여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유엔 회원국 및 파견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외 단체 및 조직과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PKO활동을 강조하였다. 국제평화의 수립과 지속은 평화유지군 단독으로 할

6) 정장수, UN PKO 장비 공여방안 연구,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2021.

수 있는 없는 과업으로 다양한 조직들의 협업과 도움으로 달성할 수 있다. 대표적인 파트너십 사례는 유엔과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의 협업으로 유엔 정책의 시행절차,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지원소요 등을 현장조사를 들 수 있다.

2. 유엔 평화유지 디지털전환전략 추진

유엔은 2014년 고위급 패널의 기술혁신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기술혁신의 도입을 통한 PKO활동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2015년 유엔 평화유지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병력 공여를 축소하는 대신에 ‘선도적인 기술공여국(Technology Contributing Country, TechCC)’으로서 유엔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는 방안 모색을 선언한 이래 44개의 기술제공 의견과 관련 자료집을 발간하고, 중앙아프리카 임무단에 4동의 모듈식 베이스캠프 등을 지원하였다.⁷⁾

유엔은 PKO활동의 기술 파트너십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2018년 ‘유엔 신기술전략(UNSG’s Strategy on New Technologies)’, 2020년 ‘디지털 협력을 위한 로드맵(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Roadmap for Digital Cooperation)’을 발표하였다. ‘유엔 신기술전략’은 최신 기술에 대해 유엔 차원의 내부전략을 공표한 최초의 공식 문서로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유엔헌장 및 국제법의 가치 실현을 위해 신기술을 글로벌 규범에 부합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⁸⁾ 디지털전환전략은 사회적 편익 최대화와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디지털 기술의 사회적, 인종적, 윤리적, 법률적 및 경제적 영향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유엔은 다차원임무단의 PKO활동 여건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기술전략과 평화유지구상(A4P)을 연계하여 2021년 ‘유엔 평화유지 디지털전환전략(Strategy for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UN Peacekeeping)’을 수립하였다. ‘유엔 평화유지 디지털전환전략’의 목표는 ① 분쟁환경에 대한 선제적 이해, ② 요원들의 PKO 안전, ③ 임무수행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신속한 대응 등 PKO활동의 활동 기반을 구축하는 것 등이며, 12개 기본원칙은 다음 도표와 같다.

7) 국방부, Global Peace Operations Initiative, Program Overview (USA), 2015.

8) 송승중, 유엔 기술전략 개념 및 추진경위, 2021.

〈‘유엔 평화유지 디지털전환전략’의 12개 기본원칙〉

- | | |
|------------|-----------------|
| ① 접근성 | ②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
| ③ 수요 주도 | ④ 무해성 |
| ⑤ 성인지 감수성 | ⑥ 인간 중심 |
| ⑦ 인권 준수 | ⑧ 포용과 투명성 |
| ⑨ 다학제성 | ⑩ 협력 |
| ⑪ 현실적 기대수준 | ⑫ 지속가능성과 확장성 |

유엔이 최근 ‘유엔 평화유지 디지털전환전략’을 비롯해 다양한 기술전략을 발표하면서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유엔의 PKO활동 소요가 명시된 ‘유엔 PKO 요구능력 보고서’는 기술과 첨단 자산, 훈련, 의료장비, 여성 요원 참여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다. 감시정찰 능력, 헬리콥터 및 수송 등 고도역량 부대, 생존성 향상을 위한 UAVs 등 첨단 장비와 기술 요구, 다차원임무단의 폐기물처리 등 환경 보호 장비와 기술, 여성 평화유지요원의 참여 확대, 의료지원 장비와 인력 확대 등 유엔이 요구하는 소요에 적극 부응할 필요가 있다.

PKO활동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계층별 지배구조(Governance)는 효율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기획단(Task Force, TF), 팀 등으로 구성하였다.

‘유엔 평화유지 디지털전환전략’은 PKO활동의 디지털화 필요성을 핵심과제로 삼고 안전안보 증진과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혁신과 신기술 활용의 극대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기존의 기술전략과 평화유지구상(Action for Peacekeeping)을 연계하여 다차원임무단의 전반적인 디지털 통합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PKO활동에 인공지능, 자율주행, 드론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최첨단 기술이 접목될 경우, PKO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PKO활동 전반에 걸쳐 적절한 기술혁신의 도입은 첨단무기와 장비가 동원되는 군사작전뿐만 아니라 긴급구호와 재건 등 분쟁 현장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며, PKO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⁹⁾

유엔은 기술혁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술공여국(Technology Contributing Country, TechCC), 군공여국(Troop Contributing Country, TCC), 경찰공여국(Police Contributing Country, PCC)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의

9) Intelligence Collection Model (ICM) Conference, 2017.

보완을 통해 삼각파트너십과의 연계성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도 국내적으로 찬반 논란이 많은 병력 지원 대신에 한국의 강점인 기술 공여와 혁신적 자산의 지원을 통한 기술공여국(TechCC)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TPP 및 LCM을 활용한 유엔 PKO활동 협력강화

유엔 PKO활동은 분쟁지역 임무의 복잡성, 위험도 증가, 예산의 제약 등 도전 과제에 직면하면서 유엔 차원의 협업과 기술혁신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다차원임무단의 현장 소요를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PKO활동의 기여 다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유엔은 ‘유엔 평화유지군 요구능력 보고서’¹⁰⁾를 통해 분기별로 다차원임무단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소요를 공표하고 있다. 유엔 현지 임무단의 소요에 대해 각 회원국은 각각의 현실과 강점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맞춤형 기여방안을 도출하여 유엔에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과 병력공여국의 PKO활동 기여 다변화 노력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호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미흡한 역량을 보완하는 등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2017년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제2차 유엔 평화유지 국방부장관회의(United Nations Peacekeeping Defense Ministerial)에서는 삼각파트너십과 연계하여 PKO활동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훈련 및 역량 강화, 신속전개 능력, 민간인 보호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분쟁지역에서 위험에 처한 인원 보호를 위해 PKO활동 도중에 파병 요원, 현지 민간인에 대한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원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되었다.

미국은 PKO활동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여 PKO 현대화 및 파트너십 강화가 요구되며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의료 교육, 유엔 개혁, 조기 전개 능력 확보 지원을 약속하였다. 프랑스는 아프리카 병력 공여국을 대상으로 사전 훈련을 지원하고 프랑스어권 환경 조성을 공약하였다. 독일은 아프리카 국가와 협력하여 PKO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여성 평화유지요원의 작전 효율성 향상을 위한 훈련과정을 추가를 제안하였다. 일본 또한 평화유지군의 훈련 및 역량강화 방안으로 삼각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을 강조하고 엔지니어링 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약속하였다. 포르투갈은 성폭력·착취 피해자를 위한 신탁기금

10) UN Department of Peace Operations, Current and Emerging Uniformed Capability Requirements for United Nations Peacekeeping, 2021.

에 참여하기로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EU·AU·UN 등 국제기구의 파트너십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유엔은 작전지역이 민간인 밀집지역인 경우 민간인 보호가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행동 준칙이 준수되도록 국가간 협력을 강조하였다.

유엔은 PKO활동의 역량 제고를 위해 국가간 협력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훈련, 장비 제공, 부대 파병 등에 있어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TPP(Triangular Partnership Programme, TTP / 이후 삼각파트너십), LCM(Light Coordination Mechanism, LCM / 이후 역량협력체계) 등의 협력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있다.

< 삼각파트너십(TPP)과 역량협력체계(LCM) >¹¹⁾



삼각파트너십(TTP)은 유엔과 훈련지원국, 병력제공국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① 유엔은 교육훈련과정을 총괄 주관하고, ② 훈련지원국(Supporting Member States, SMS)이 교관, 장비 등을 지원하여, ③ 병력제공국(Troop Contributing Country, TCC)에게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시행하는 협력사업이다.¹²⁾ TTP는 2014년부터 추진되어 유엔 PKO활동의 공병, 의료, 정보기술 분야의 교육훈련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다. 역량협력체계(LCM)은 최근 들어 UN 차원에서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 장려하는 모델로 ① 유엔은 각국의 수요를 매칭하고 모니터링하는 역

11) 김은경, 국제평화유지활동 기여 확대방안 연구, 국방부, 2022.11.

12) 박상중, 유엔 PKO 삼각 파트너십 발전방안, PKO저널 23권, 국방대학교, 2021.12.

할을 수행하고, ② 장비와 훈련을 지원하는 국가와 ③ 병력을 제공하는 국가가 양자 협력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LCM은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삼각파트너십(TPP)의 추진사례는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우간다 엔테베 PKO훈련센터를 활용한 의료훈련, 아세아 국가 대상 공병 훈련 등이 있다. 또한, 스위스, 브라질, 이스라엘 등은 케냐 훈련센터와 협력하고 있고 호주는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국가를 대상으로 훈련을 제공할 계획에 있다. 한국 또한 공병부대 파병의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의료역량을 활용하여 공병, 의료분야의 삼각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병분야는 아세아 국가를 대상으로 교관과 장비를 제공하여 공병훈련을 추진하고, 의료분야는 의료교관을 양성하여 의료를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역량협력체계(LCM) 추진사례는 호주와 피지의 파트너십에 따라 호주군에서 피지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Blackrock Camp훈련을 들 수 있다. 한국은 지난해 20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서 아프리카임무단에 500MD군용헬기 공여를 약속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헬기운용에 필요한 훈련과 정비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미국 또한 한국과 케냐의 헬기부대 파트너십에 동참하여 헬기정비 등을 지원할 의사를 개진하였다. 덴마크, 호주 등은 말리 등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차원임무단에 수송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병력을 제공하는 국가와의 협력도 검토하고 있다. 탄자니아, 튀니지는 역량협력체계(LCM)를 통해 재정, 장비 등을 지원받을 경우 추가 파병을 공약으로 발표하였다. 향후 지원국가와 병력공여국의 협력을 통한 PKO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 주최국 한국은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회원국의 이행전략과 세부 지원소요 등을 명시한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에 관한 서울 이니셔티브’를 선언하여 회원국의 동참을 독려하고 한국의 기여 의지를 천명하였다. 또한, PKO활동의 복합적인 임무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과 의료 역량강화 중요성과, 기존 시스템과 신기술을 연계한 회원국과의 협업의 통합적 발전을 강조하였다. 특히 기술과 관련하여, 한국은 유엔이 제시한 디지털전환전략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금을 지원하고 유엔 임무단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스마트캠프 전시회와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회원국과의 협업을 위해 유엔 캠프 혁신 지원, 기술의 이해와 활용 훈련, 전문화, 상호 협력을 통한 역량 격차 해소 등에 회원국이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의료와 관련하여 유엔은 다차원임무단의 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정책의 개선, 평화유지요원들에 대한 의료훈련 강화,

적절한 의무장비의 보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은 회원국의 재정과 훈련, 기술 제공을 독려하고, 부상자 후송 지원, 복지 향상, 원격의료 등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IV. 한국의 PKO활동 개선방안

한국은 과거 유엔과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국가에서 현재 PKO활동의 주요 국가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2022년 현재 한국은 레바논 동명부대와 남수단 한빛부대 등 2개 부대파병, 인도·파키스탄 등 5개 임무단과 유엔본부의 개인파병을 포함하여 약 570명이 유엔 PKO활동에 참여하고 있다.¹³⁾ 2013년 이후 추가적인 부대파병은 없으나, 개인파병 확대, 파병 이외의 다양한 기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유엔 회원국 중에서 2020년 기준, 파병규모는 약 570명 35위이고, 재정기여는 유엔 전체예산의 2.267%(1.41억\$)를 지원하여 2019년부터 10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한국의 PKO활동에 대해 매우 모범적이나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있고 타국 군대와와의 협동작전 참여가 미진하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첨단장비와 기술을 활용한 기술 및 자산 기여도 미미한 상태이다. 유엔 재정기여율 상위권 국가의 기술분야 평균 부담률 0.24%와 대비하여 한국의 기술분야 부담률은 0.09%로써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IT 강국의 장점인 로봇이나 무인기 등 첨단장비 운용도 부족한 상태이다.¹⁴⁾ 유엔 평화유지국(Department of Peace Operations, DPO)에서도 한국 정부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이 병력보다는 장비·기술 중심의 기여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은 한반도 상황에 따른 군사대비태세 투입 역량을 유지한 가운데 한국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과 의료 및 훈련, 자산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엔의 PKO활동 소요에 적합한 기여방안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강점인 IT 기술을 활용하여 복잡하고 다변화된 분쟁환경과 열악한 현지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 첨단 과학화 경비체계, 드론 등 무인 정찰체계, 친환경

13) 동명부대는 2007년 파병되어 정전감시와 레바논 평화정착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한빛부대는 2013년 파병되어 남수단 재건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14) United Nations (2022), <https://operationalsupport.un.org/en/partnership-technology-peacekeeping>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등 현지 시설, 작전 등을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스마트캠프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유엔의 평화유지 디지털전환전략, 삼각파트너십(TTP), 역량협력체계(LCM) 등 디지털기술 활용과 국제적 협력강화 추세와 연계하여 한국의 강점인 첨단기술 및 훈련역량을 PKO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6대 PKO활동 기여공약과 연계하여 공병 및 의료분야뿐만 아니라 다목적 헬기, 감시장비, 드론 등 기술과 자산을 활용한 기여방안에 대한 가능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한국의 국력에 걸맞은 실질적이고 효과성 있는 유엔 PKO 기여 다변화 방안을 도출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은경, 국제평화유지활동 기여 확대방안 연구, 국방부, 2022. 11.
- 박상중, 유엔 PKO 삼각 파트너십 발전방안, PKO저널 23권, 국방대학교, 2021. 12.
- 송승중, 유엔 기술전략 개념 및 추진경위, 2021
- 정장수, UN PKO 장비 공여방안 연구,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2021
- 국방부, Global Peace Operations Initiative Program Overview (USA), 2015
- Intelligence Collection Model (ICM) Conference, 2017.
- United Nations, UN Department of Peace Operations, Current and Emerging Uniformed Capability Requirements for United Nations Peacekeeping, 2021.
- United Nations, Strategy for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UN Peacekeeping, 2021. 8.
- United Nations (2022),
<https://operationalsupport.un.org/en/partnership-technology-peacekeeping>

MCS를 통해 바라본 동명부대 발전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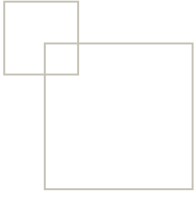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Dong-Myeong Unit in View of MCS

중령(진) 김세하
Kim, Se-Ha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유엔에서 각 임무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MCS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대한민국을 대표로 레바논에 파병되어있는 동명부대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MCS는 유엔 임무단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국가 PKO정책을 수립 시 MCS에서 강조하는 중점사항과 도출되는 점검결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레바논 임무단을 대상으로 가장 최근에 시행된 MCS-2018과 곧 시행 예정인 MCS-2023의 중점사항 등을 분석하여, 동명부대의 발전방안을 두 가지 도출하였다. 첫째, 동명부대는 작전지역을 확대해야 한다. 작전지역의 확대는 유엔과, UNIFIL, 레바논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인 시범연대(Model Resigment)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임무의 핵심인 블루라인을 담당하는 동시에, 시범연대와의 연합훈련, 민군작전 등을 통해 동명부대의 그동안의 성과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국가제한사항(CAVEAT)을 폐지해야 한다. 임무단의 작전지시에 대한 이행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역할에 적극적으로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readers' understanding of the MCS conducted by the UN for each mission and to present the development plan of the Dong-Myeong Unit deployed to Lebanon by analyzing the most recent MCS-2018 and the upcoming MCS-2023. Since the MCS presents the direction of the UN mission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onder the key issues and inspection results presented by the MCS when establishing the PKO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Dong-Myeong Unit should expand its operational area. The expansion of the operational area should be promoted in connection with the Model Regiment, which is being interested the most by the UN, UNIFIL, and the Lebanese government. Secondly, the CAVEAT should be abolished. The diplomatic status o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be enhanced by actively implementing the mission's operational instructions and contributing to its role as a peacekeeping force.

ABSTRACT

MCS¹⁾를 통해 바라본 동명부대 발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Dong-Myeong Unit
in View of MCS

중령(진) 김세하²⁾

Kim, Se-Ha

I. 서론

레바논 정부의 요청에 따라 2022년 8월 31일 유엔결의안 2650호가 채택되면서, UNIFIL의 위임명령이 1년 연장되었다. 이로써 UNIFIL은 45년 차 유엔임무단으로 그 맥을 이어가게 되었다. 새로 채택된 유엔결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임명령 상 큰 변화는 없다. 다만, 최근 레바논의 복합위기 상황을 고려해서 레바논 주민들과 군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과 군수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국제사회에 당부하는 동시에 남부레바논 지역에 레바논군(LAF: Labanese Armed Forces)의 완전한 전개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6월 창설한 시범연대(Model Regiment)의 빠른 전개를 촉구하였다.

한편, 레바논의 경제위기가 시작된 2019년, 안토니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증가하는 평화작전 임무들을 소화하기 위한 예산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평화작전에 가장 큰 재정기여국인 미국은 2022년 회계연도에 평화작전을 위한 금액을 15억 달러로 배정하였지만, 이 금액은 유엔에서 평가한 분담률 26.94%

1) MCS(Military Capability Study)는 유엔에서 임무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군사분야 정기감사를 말한다.

2) 교육공학 석사(연세대), 국가안보학 박사과정(상명대), (현)UNIFIL사령부 기획장교

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³⁾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UNIFIL의 임무전환이 논의되고 있으며, 차후 편제 인원을 9,000명까지 축소하고, 8,500여 명의 병력 수준으로 위임명령을 이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⁴⁾ 실제로 2020년, 유엔결의안 2539호는 UNIFIL의 편제인원을 15,000명에서 13,000명으로 감축하도록 조정하였으며, 2022년 현재 UNIFIL은 10,300여 명의 평화유지군으로 위임명령을 이행 중이다. 예컨대, 2021년에는 UNIFIL MTF(Maritime Task Force)의 함정 편제를 6대에서 5대로 삭감했으며, UNIFIL의 작전지역 내 운용 중인 55개의 UNP(United Nation Post)를 50개로 축소하였다.⁵⁾ 2020년 유엔결의안은 2018년 MCS에서 검토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병력감축을 확정했으며, 이 시기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파병부대인 동명부대의 편제 또한 300명에서 250명으로 축소되었다.

대한민국은 1981년 레바논과 수교 이래 연간 2억 달러의 교역을 하고 있다.⁶⁾ 1991년 유엔에 가입 이후 최장기로 파병을 보내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국제무대에서 선진국의 지위⁷⁾로,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지를 확보하고 세계의 보편적인 가치를 증진한다는 차원에서 PKO에 참여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가깝게는 세 번째⁸⁾로 비상임이사국(24-25년) 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서울에 유엔본부를 유치하거나, 유사시 유엔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등 그 가치와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유엔 임무단은 안보·경제 상황, 유엔의 예산 및 정책 등에 따라 위임명령 또는 작전계획 등이 조정될 수 있다. 변화되는 상황들이 임무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러한 영향들이 대한민국의 파병부대(동명, 한빛)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그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해 확

3) Luisa Blanchfield, "United Nations Issues: U.S. Funding of U.N. Peacekeeping",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2.

4) David Schenker, Assaf Orion, "Lebanon's Crisis and UNIFIL's Mandate Renewal", 2021, <https://www.washingtoninstitute.org> (검색일: 2022. 09. 21.).

5) UNIFIL FAP(Force Adaptation Plan) 2020에 따르면, 기존 운용 중인 55개의 UNP에서 2022년 8월 기준, 2개를 폐쇄하여 53개를 운용 중이며, 3개의 UNP는 공사 중이다. 2022년 내 모든 작업을 마무리해서 50개의 UNP만을 운용 할 예정이다.

6) 이경수, 김은비, "레바논 실패국가가 되어가고 있는가?", 『세계지역연구논총』제3호, 231-263 (2021).

7) 2021년 7월 2일 개최된 제68차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력회) 이사회는 대한민국의 지위를 그룹A(아시아·아프리카)에서 그룹B(선진국)로 변경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일 22. 8. 16.).

8) 한국은 지난 1996-1997년, 2013년-2014년 각각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바 있다.

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임무단 내에서 대한민국의 입지, 해당국과의 외교적인 관계, 파병 지속여부 등 대한민국의 국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엔의 중장기 계획이 유엔 평화유지국에서 주관하는 MCS를 통해 시작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한민국의 PKO정책을 수립할 때 MCS의 중점사항과 준비과정, 점검결과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명백하다. 이를 고려하여 본고는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작성하였다. 첫째, PKO와 관련된 업무를 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MCS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둘째, 레바논 임무단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던 MCS-2018의 결과와 2023년 계획된 MCS의 진행되는 과정들을 검토하여 동명부대의 발전방안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연구하기 위한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MCS가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개괄한다. 3장에서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MCS-2018의 결과와 FAP-2020의 주요내용, 그리고 그 특징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2023년 예정된 MCS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떠한 이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후, 마지막 5장에서는 동명부대의 발전방안을 제안하며 마무리한다.

II. MCS는 무엇이며, 그 의미는?

MCS는 임무단 현재의 능력을 고려하여 현재, 그리고 미래의 작전 목적과 임무, 단계별 작전에 대한 실행가능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그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 “Capability”(능력)라 함은 위임된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병력, 장비, 군수지원 능력, 편제·조직, 교육훈련, 업무절차 등을 망라한다. 유엔은 최종 발행되는 MCS 리포트를 통해 임무단의 위임명령과 군사 목표에 부합한 조직 구성의 작전적 효용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의 측면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한다.

MCS는 UN-DPO-OMA-MPS⁹⁾에서 실무를 담당하며, 확보된 연간예산을 고려하여 연 단위 업무로 계획된다. 유엔에서 진행 중인 모든 임무단¹⁰⁾에 대해서 2년 주기로 MCS를 진행하도록 예규화되어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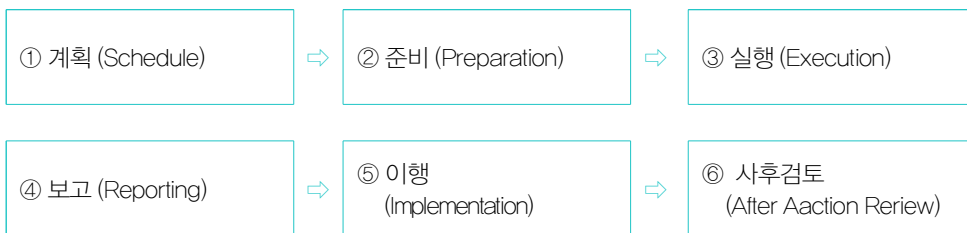
9) DPO(Department of Peace Operation), OMA(Office of Military Affairs), MPS(Military Planning Service)

10) 2022년 10월 5일 기준, 12개의 임무단이 위임명령을 이행 중이다.

수 있는데, 임무단의 위임명령이 급박하게 변경되어야 할 상황에서는, 계획되지 않았던 MCS 팀이 구성되어 해당 임무단의 위임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¹¹⁾

MCS는 <표 1>과 같이 6단계의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계획” 단계로, OMA에서 예산을 고려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 두 번째는 “준비” 단계로, 실제 현장검열로부터 4개월 전에 MCS 팀이 구성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준비단계의 핵심은 현장검열 이전에 행해지는 “행정검열(desk review)”로, MCS 팀이 사전에 선정한 주요 임무(Mission & Tasks)들을 기초로 임무단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 진행된다. 임무단에서 MCS팀이 선정한 임무들을 먼저 분석한 후, 현장검열로부터 두 달 전까지 분석결과를 MCS팀에 제출한다. MCS팀은 임무단에서 분석한 내용을 기초로 현장검열 전까지 유엔 차원의 분석을 진행한다. 세 번째는 “실행” 단계이다. 실행단계에서는 MCS팀이 실제 임무단을 방문하여 현장 지휘관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작전상황을 브리핑 받는 등 현장의 실상을 직접 확인하며 진행된다. 네 번째는 “보고” 단계로, 행정검열과 현장검열을 통해 분석된 내용들을 MCS팀에서 최종 보고서로 통합하는 과정이다. 통합하는 과정에서 임무단의 최종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검열이 종료된 4주 이내 최종 보고서가 발간된다. 다섯 번째 단계는 “이행” 단계로, MCS의 최종 보고서가 임무단에 하달되면, OMA는 임무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마지막 단계는 “사후검토”로, MCS 팀에서 전반적인 MCS 절차와 방법 등을 검토함으로써 차후 MCS를 위한 교훈을 도출한다.

<표 1> MCS 단계별 절차



유엔은 MCS를 통해 임무단에 주어진 위임명령과, 분쟁당사국 간의 안보상황, 분쟁 당사국의 현재 처해진 정치, 경제, 치안, 인도적 상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임무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작전개념, 인원·장비 편제의 적절성 등을 재설정한다. 이러한 이유로, 임무단의 주요직위자(MLT: Mission Leadership

11) UN,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Military Capability Study, 2022.

Team)¹²⁾를 비롯한 병력공여국(TCC: Troop Contribution Countries)에서도 MCS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며, 각 국가들은 국가이익을 위한 보이지 않는 외교적인 노력을 한다.

MCS의 결과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여 년 동안 임무단의 중장기 계획과 예산사용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동명부대를 비롯한 모든 부대의 작전이나 편제 조정, 장비의 교체 및 과학화 장비의 도입, 부대 수의 증가 및 축소, 크게는 작전지역의 전환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적지 않다.

MCS가 계획되면 준비단계 전부터 UNIFIL 사령부에 근무하는 개인 파병자(작전기획처), 동명부대, 국방부 평화협력과, 합참 해외파병과, 주레바논 대한민국대사관,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MCS에서 주로 다루어질 임무가 무엇인지, 동명부대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접근하고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Ⅲ. MCS-2018 / FAP-2020 결과

UNIFIL을 대상으로 진행한 MCS는 2018년 9월 진행된 이래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다음 MCS는 2023년 1월 말에 예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MCS가 실시되지 않은 이유 중 코로나-19 팬데믹도 한 몫 했지만, 2018년 MCS 이후 그 결과로 수립된 UNIFIL의 중장기계획인 FAP(Force Adaptation Plan)-2020이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UNIFIL은 FAP-2020을 수립한 이래, 4개월 마다 진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유엔 평화유지국에 보고하고 있다. 즉, 유엔 평화유지국에서는 UNIFIL의 MCS-2018과 FAP-2020의 결과를 동시에 확인하며, 후속조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이다.

가. MCS-2018 결과

2018년 MCS는 당시의 위협분석과 유엔결의안 1701호(2006), 2373호(2017), 2433호(2018)에 명시된 위임명령을 기초로 진행되었다. 유엔결의안 2373호는 UNIFIL의 현시 능력(순찰활동, 조사 등의 활동)을 증가시킬 것과 양질의 정보 수

12) UNIFIL의 MLT는 임무단장/사령관(HOM/FC), 부임무단장(DHOM/DPCA), 부사령관(DFC), DMS장, PCO장, 참모장(COS)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되며, 주요의사결정을 하는 주요직위자들을 의미한다.

집 및 보고 능력을 갖추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하였다. 특히, 블루라인 일대의 작전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유엔결의안 2433호 또한, UNIFIL의 현시 능력을 강화하고, 레바논 남부지역에 새롭게 전개될 시범연대(Model Regiment)와의 연대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2018년 9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진행된 MCS-2018은 5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지상군과 MTF의 SFR(Statement of Force Requirements)과 현재 위임명령 이행을 위해 작전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둘째, 일관성 있는 부대의 편성을 위해 주요 장비(ME: Major Equipment)와 전개된 기동장비들의 실제 요구가 부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셋째, 남부레바논 지역에서 UNIFIL의 현시 능력 증대를 위한 군사 능력 향상방안을 검토하였다. 넷째, 부대들의 새로운 SUR(Statement of Unit Requirements)을 개정하기 위한 기초작업과 이후 MOU 재협상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존하는 CONOPS(2012)와 SFR(2017)의 개정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위 5가지의 목적을 중점으로 행정 및 현장검열을 실시한 결과, UNIFIL은 위임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편성과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전반적인 평가를 받으며, 14가지의 사항들을 조정하고 보완하도록 권고받았다. 14가지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로, UNIFIL과 여단 참모부의 편제 인원을 축소하고, 연락부서(Liaison Branch)의 연락장교들이 원활히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부대 전반에 걸쳐 여성인력의 편성을 증가하도록 하였다. 둘째, 유엔 평화유지국의 정보 정책에 맞추어 임무정보협조기구(MICS: Mission Intelligence Coordination Structure)를 편성하여 정보유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동명부대와 사령부 예비(FCR: Force Commander Reserve)를 포함한 10개의 대대를 유지하면서, 기동장비를 경량화하여 레바논의 좁은 도로 및 작전지역 곳곳을 다닐 수 있도록 작전의 융통성을 부여하였으며, 블루라인을 담당하는 아일랜드 대대의 편제를 보강하였다. 넷째, 사령부 예비 부대인 FCR의 편제를 700명으로 축소하고, 포격도발 등의 감지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사용 중인 2대(COBRA, NC1)의 레이다 운영을 유지하였다. 반면, 지대공 미사일(MISTRAL)의 사용은 위임명령을 이행하는데 불필요하고, 교전수칙(ROE)에 위배 되기 때문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섯째, 1개 차량형 중대(135명)를 보유한 동명부대의 경우, 과도하게 편성된 작전지원대(191명)의 병력을 축소하도록 권고받았고, 여섯째, 다영역(Multi Role) 공병중대에 EOD임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여단 직할의 공병부대는 철수

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여단의 통신중대 및 지원중대의 편제를 축소하였다. 여덟째, UNIFIL의 민군작전은 QIP(Quick Impact Project) 및 각 대대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수행되고 있다는 점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사령부 예하 CIMIC(Civil-Military Cooperation)과 MCOU(Military Community Outreach Unit)의 편성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각 제대에서 이루어지는 민군작전에 대한 노력의 중복과 지역별 균형된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령부급 특히, DPCA 예하 Civil Affairs와 PIO(Public Information Officer)와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하였다. 한편, 모든 민군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팀 구성의 50% 이상을 여군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홉 번째로, 유엔장비(UNOE: United Nations-owned equipment)를 활용하는 부대들의 부대장비(COE: Contingent-owned Equipment)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과 요구사항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열 번째로, 사령부 본부대의 편성을 축소하였다. 열한 번째로, 군사경찰의 편제를 축소하였다. 열두 번째로, 다영역 군수 부대(Multi Role Logistic Unit)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보장하도록 MSD(Mission Support Division)와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열세 번째로, 임무단의 작전적 요구사항에 부합한 병원의 구조와 능력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레바논 해군의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MTF의 함정 수를 유지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UNIFIL의 다양한 부대들의 편제가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군사조직을 기준으로, 11,312명의 인원이 10,022명으로 조정되며 1,000여 명 이상의 병력이 축소되었다. 한편, 다양한 부대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를 피해간 부대들은 10개의 보병대대 중 블루라인을 담당하고 있는 대대들과¹³⁾ 민군작전을 전담해서 실시하는 사령부 예하의 CIMIC과 MCOU였다. 이를 통해 블루라인 일대에서의 작전활동과 작전지역 전반에서 행해지는 민군작전은 임무단의 위임명령을 수행하는데 핵심임무들로 평가됨을 알 수 있다.

나. FAP-2020 주요내용

MCS-2018 이후 유엔결의안 2539호(2020)에서 유엔은 UNIFIL의 작전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을 요구하며, 2020년 10월 사무총장 서안(S/2020/1059)을 통해 <표 2>와 같이 5가지 항목과 10가지의 세부요소를 포함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13) 아일랜드는 오히려 병력을 증가하라고 권고받았고, 후방에 위치한 동명부대와 사령부 예비인 FCR만 병력이 축소되었다.

〈표 2〉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2020/1059, 2020.의 내용을 바탕으로, 표형식으로 재구성함.

5가지 항목	10가지 세부요소
① 능력	① 경차량으로 교체
② 작전	② 연락 및 조정능력 강화
③ 첨단기술	③ HQ 편제 조정
④ MTF	④ UN부대 통폐합
⑤ 작전지원	⑤ 첨단기술 활용
	⑥ MTF 편제 검토
	⑦ 작전지원 및 지속부대 통합 및 가시화
	⑧ 잉여장비 철수 및 유엔장비를 TCC장비로 교체
	⑨ 통신 기술 과 지역 정보 검토
	⑩ 민간조직 검토

UNIFIL은 권고받은 5가지 항목과 10가지 세부요소를 바탕으로 FAP-2020을 수립하는데, 그 주요 골자는 다섯가지 작전선(Line of Operation)으로 설명된다. 첫 번째 작전선은 “효율적 부대배치(Streamlined Layout)”로, 55개 운영하던 UNP를 50개로 통폐합하였다. 통폐합된 5개의 UNP는 레바논군(LAF)에 이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레바논군(LAF)이 남부레바논에 점진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지원한다. UNP를 통폐합하는 목적은 예산과 부대방호의 노력을 줄이는 동시에 부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있다. UNP의 축소는 두 번째 작전선에서 소개될 “카메라 프로젝트”와 함께 연계되어 진행이 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병력이 철수한 장소는 카메라 등의 최신장비로 그 공백을 대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레바논 정부(헤즈볼라)의 반대로 카메라 프로젝트는 진행되지 않고 있으나, 5개의 UNP 중 2개소는 레바논군(LAF)에 인계가 완료되었고, 3개소는 95% 진행이 완료된 상태이다. 두 번째 작전선은 “감시능력 강화(Enhance Monitoring)”로, 부대방호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엔결의안 위반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탐지할 수 있는 감시, 보고 능력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감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5개의 소과제를 포함하는데, 최근 유엔에서 강조하는 최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두 개의 과제는 작전지역 주변에서 가장 빈번하게 행해지는 공중에서의 위반행위와 포격도발 등을 고려한 것으로, 현재 보유한 레이더로 작전지역 전체가 탐지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상에 1개, MTF에 1개를 각각 추가 설치하도록 하였다. 현재 MTF에는 설치가 완료되었고, 지상 레이더의 설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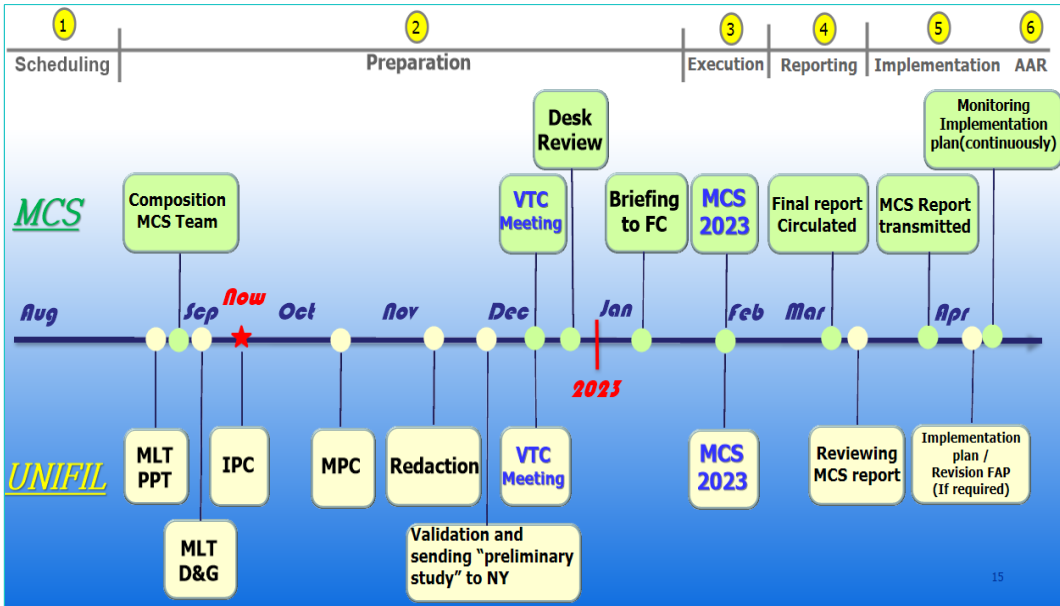
23년 전반에 완료될 예정이다. 세 번째 과제는 공중 영상정보 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문 공중 정찰팀에 의해 야간상황을 포함한 관측, 촬영, 수집, 전파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과제는 블루라인 일대 카메라를 설치하여 감시능력을 보강하고 UAV를 운영하여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다. 그러나 레바논 정부(헤즈볼라)의 반대로 두 계획 모두 진행되지 않고 있다. UNIFIL은 지속적인 전략대화 등의 노력을 통해 해당 작전선을 달성해야 할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 세 번째 작전선은 “기동능력의 증대(Increase Mobility)”이다. 기존 장갑차량 등 부피가 큰 고중량의 차량들이 남부레바논 작전지역의 좁은 골목길을 지날 때 지역주민들의 사유지에 피해를 줌으로써 UNIFIL과 지역주민들 간의 신뢰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곤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고중량의 차량은 상대적으로 작전 반응속도가 떨어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점령군으로서의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중량의 장갑차량(APC: Armored Personnel Carriers)을 경차량(HMLTV: High Mobility Light Tactical Vehicles)으로 교체하도록 하였다. 인도, 네팔, 말레이시아, 가나, 인도네시아 등 5개 대대에서 차량을 교체해야 하지만, 차량 변경에 대한 권고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엔과 각 국가 간의 MOU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네 번째 작전선은 “연락부서의 보강(Liaison Brnch Reinforcement)”으로, 블루라인의 긴장을 완화하고, 순찰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연락부서에 4명의 연락장교를 추가 증원하여 블루라인의 순찰을 강화하였다. 추가 증원된 2명의 연락장교는 이스라엘 군(IDF)과 레바논군(LAF) 사령부에 각각 배치되어 긴장이 고조될 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의 반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마지막 작전선은 “MTF의 편제 정형화”로, 함정 5대와 2대의 헬기를 운영함으로써 레바논 해군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레바논 수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획대로 5대의 함정이 운영되고 있지만 헬기의 경우, 1대만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한 대는 공여 예정국인 튀르키예와 유엔의 행정적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MCS-2018에 이어 FAP-2020까지 UNIFIL은 블루라인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대부분의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계획된 다섯 개의 작전선은 UNIFIL의 문제보다는 유엔과 당사국들 간 또는 레바논과 이스라엘 정부 및 군의 정치적인 문제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된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유엔과 UNIFIL의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MCS-2023에 잘 나타나 있다.

IV. MCS-2023의 방향

2022년 11월 현재 UNIFIL은 MCS-2023의 두 번째 “준비”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전반적인 단계는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그림 1>과 같이 6단계로 구분하여 유엔 MCS 팀과 UNIFIL이 함께 준비 중이다.

<그림 1> MCS 진행 로드맵



유엔의 MCS 팀은 UNIFIL에 21개의 임무를 분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21개의 임무는 <표 3>과 같다. 21개의 임무를 부여받은 후 UNIFIL의 작전기획처에서는 UNIFIL지휘부(MLT)에게 MCS 준비를 위한 착수 보고를 9월에 진행하였고, 10월에 임무를 분석할 방향에 대한 지침(D&G: Directions & Guidances)을 받았다.

〈표 3〉 MCS 팀에서 UNIFIL에 사전검토를 지시한 21개의 임무와 지침

〈21개 임무〉

- ① MCS-2018 및 FAP-2020 진행여부 평가
- ② 최근 위협 분석
- ③ 위협인식과 위임명령을 기초로 임무분석에 중점을 둔 작전 검증
- ④ UNIFIL과 여단의 구조와 편제 검토
- ⑤ 화력을 포함한 위임명령 이행에 대한 부대 평가
- ⑥ 작전지원 및 지속지원부대의 능력과 임무 중복여부 확인
- ⑦ 지휘통제 및 통신, 다양한 부대의 상호운용성 확인
- ⑧ 부대 기동능력 검증
- ⑨ COE가 부대 운용요건을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주요장비 및 자체유지 능력의 적절성 검토
- ⑩ MTF의 작전 능력 검토
- ⑪ 안전, 보안, 부대방호 능력 평가
- ⑫ 작전계획에서 젠더 관점의 강화 여부 확인
- ⑬ 민군작전 능력 검토
- ⑭ 헬기, 정보자산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유용성 검증
- ⑮ 헬기 자산의 작전적 능력 검토
- ⑯ Medivac 능력 평가
- ⑰ 전문성, 편성, 역량, 운영방식을 포함한 위반사항조사부서(Technical investigation cell)의 역량 검토
- ⑱ 민간조직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의 조정, 협조 여부 확인
- ⑲ 정보 관리, 보고, 분석 절차 및 도구 검토
- ⑳ CAVEATs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
- ㉑ 작전적 과제의 적합성과 긍정적인 태도 평가를 위한 다양한 수준에서의 사고방식 평가

〈UNIFIL MLT 지침〉

- ① MTF 함정수는 유지하되 레바논군(LAF)과의 연합훈련을 위한 함정 종류, 규모 검토
- ② 동부여단의 거리를 고려하여 2대의 헬기 추가 검토, 기존 러시아 민간헬기(M18) 철수 검토
- ③ 군 편제는 현 상황과 위임명령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 편제 유지.
단, 예하부대에서 좋은 안이 있다면 건의 가능
- ④ 정무민사국(DPCA) 예하 군 공보부서(MPIO)기능 보강
- ⑤ 여단과 대대의 작전지역 조정 검토, 여단을 중심으로 고려, 현실성있는 대안과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요소가 없는지를 검토
- ⑥ 드론 식별을 위한 별도의 능력 검토
- ⑦ 민-군 통합을 위한 현편제 내 조정요소 검토
- ⑧ 통합작전상황실의 능력 보강을 위한 방안 제시
- ⑨ 블루라인과 부대 주둔지의 감시를 위한 카메라 설치 제안

21개의 과제와 지휘부(MLT)에서 하달한 지침(D&G)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MCS-2018과 FAP-2020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과 유사한 점이 많다. 작전의 효과성, 편제의 적절성, 기동능력, 군수지원능력, 민군작전, 최신기술의 도입, 젠더 이슈, MTF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거와 유사하게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작전지역 조정”과 “CAVEAT”에 대한 검토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2022년 8월 대한민국 외교부와 국방부의 합동정부성과평가단이 UNIFIL 임무단장(HOM/FC)을 환담을 했을 때 대한민국의 의사를 표명했던 사항과도 부합하는 내용으로, MCS-2023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가적 차원의 검토가 신속히 이루어져, 동명부대의 성과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V. 동명부대 발전방안

UNIFIL은 1978년 창설 이래 남부레바논 지역에서 45년째 위임명령을 이행하고 있다. UNIFIL의 임무 지속 여부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이해관계를 통한 안보상황, 대리전 양상으로 보이지 않게 그들을 지원하는 외부세력들에 의한 파괴 게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관계 등 다양한 국제정치의 역학관계 속에서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부터 시작된 레바논의 절망적인 경제붕괴와 그로 인해 발생한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레바논 주민들의 인도적 지원 소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레바논군(LAF) 또한 병력 이탈현상과 제한된 군수지원 등 임무수행 능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UNIFIL의 위임명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레바논의 정치적 안정화와 IMF와의 전향적인 협상, 해상 경계협상의 원활한 타결과 유전 생산을 통한 경제위기의 극복, 레바논군(LAF)의 정상적인 임무수행을 통한 남부지역으로의 안정적인 정착은 언제든 상황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먼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 현실로 다가온 이후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에 늦어질 수 있다. 지금부터 현실성 있는 동명부대의 발전방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언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국가적으로 합의된 정책을 통해 시의적절한 결단력과 추진력이 요구된다.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MCS와 FAP의 중점사항과 점검결

과를 고려하여 도출되어야 하며, 필자는 이를 고려하여 두 가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1. 작전지역 확대

작전지역의 확대는 동명부대의 장기적인 역할수행에 필수적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담당하고 있는 작전지역은 서부여단의 일부로써, <그림 2>와 같이 최전선인 블루라인으로부터 후방지역에 가장 협소한 정면을 담당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대대들과 비교해도 작전지역뿐 아니라 병력 규모 면에서 가장 작다.¹⁴⁾ 작전지역의 확대는 단순히 동명부대가 현재 위치한 지역에서 규모만을 늘리는 수준으로 진행할 경우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MCS-2018 결과에서 확인하였듯이, UNIFIL의 작전은 블루라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블루라인은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인 GOP 경계작전에 대한 노하우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동시에, 레바논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위임명령을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군사적·외교적 입지를 확대할 수 있다. 필자는 동명부대의 작전지역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레바논군(LAF)의 “시범연대”가 위치한 지역으로 작전지역을 조정할 것을 아래의 세 가지 이유와 함께 제안한다.

<그림 2> UNIFIL, 국가별 작전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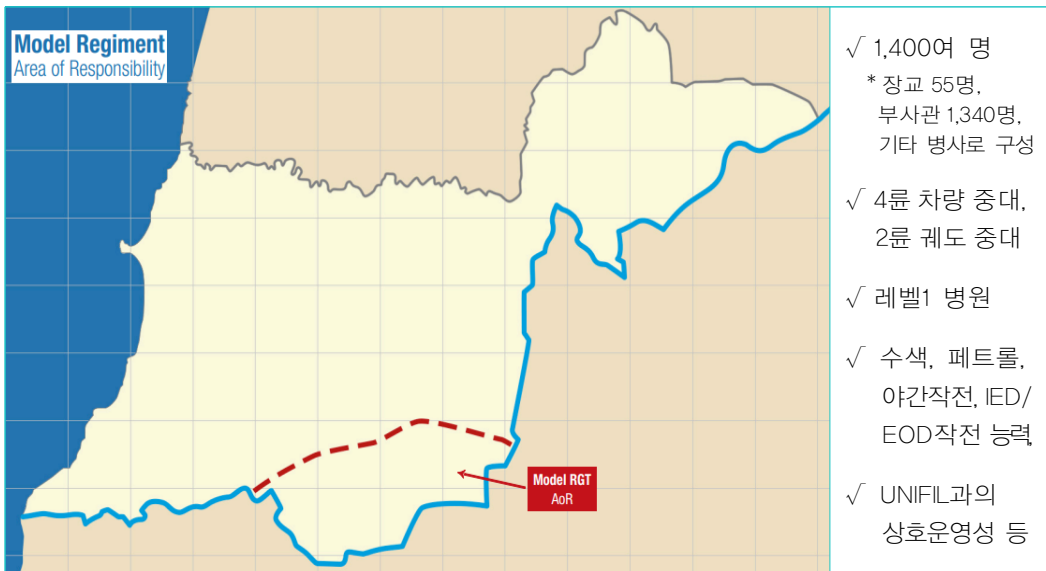


14) 블루라인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대대(이탈리아, 가나, 네팔, 인도네시아, 인도 등)들은 850여 명이 임무를 수행 중이고, 대한민국 동명부대는 280여 명이 임무를 수행 중이다.

먼저, 시범연대의 작전지역은 블루라인을 포함한다. MCS-2018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블루라인을 담당하는 부대들은 병력 감축을 피할 수 있었다. 블루라인은 UNIFIL의 위임명령을 이행하는 첫 번째 우선순위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분쟁과 긴장을 억제하기 위한 핵심임무가 수행된다. 후방지역에 위치한 부대는 축소 또는 철수의 우선순위에 놓이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UNIFIL에게 주어진 남부레바논에 대한 군사적 권한을 점차 레바논군(LAF)에 이양하게 됨에 따라 UNIFIL의 감축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시범연대의 작전지역은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서부여단 지역의 가나대대와 아일랜드대대 그리고 동부여단 네팔대대의 일부를 포함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지역은 서부여단 지역의 가나대대 우측 정면과 아일랜드대대의 좌측 정면의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이다. 작전지역의 변화는 대한민국이 작전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영향을 받는 타국가들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타국가의 철수를 전제로 고려하거나, 두 여단(동부, 서부)의 작전지역을 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3> UNIFIL 내 시범연대 작전지역



두 번째 이유는, 시범연대와의 연합훈련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임명령 이행을 위해 레바논군(LAF)과의 연합훈련을 통한 그들의 군사능력을 증진하는

것은 레바논군(LAF)의 남부지역 조기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표 4>와 같이 유엔과 UNIFIL에서 강조하는 핵심임무 중 하나이다. 특히, 동명부대의 모체부대는 UNIFIL 내에서 가장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특전사로, 다양한 연합 훈련을 통해 레바논군(LAF)의 요구(Needs)를 충족하고 동시에 우리 군의 연합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표 4> UNIFIL 위임명령과 시범연대의 임무(Mission)와 목표(Objectives)

UNIFIL 위임명령	시범연대의 임무(Mission)와 목표(Objectiv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대행위 감시 • 레바논군(LAF) 남부 레바논 안전 전개 지원 • 리타니 강과 블루라인 사이 지역에서 불법무기 유입 차단 • 레바논 정부 및 군이 요구 시 국경지역 경계유지 • 지역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피난민 안전 복귀 지원 • 작전지역 내 적대행위 금지 보장 • 유엔 요원, 시설 및 장비 보호 • 유엔 요원 및 종사자들의 작전지역 내 이동의 자유 보장 • 급박한 신체적 위협에 대한 민간인 보호 	<p><임 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IFIL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리타니강 이남 지역의 작전적 증력을 증대 • 유엔결의안 1701호에 의거 UNIFIL과 합동노력을 통해 레바논의 책임을 이행하고 블루라인을 존중 • UNIFIL에서 레바논군(LAF)으로의 점진적인 군사적 책임을 이양 • 남부 레바논에서 레바논군(LAF)의 더 높은 안보 책임 <p><목 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부레바논에서 레바논군(LAF)의 현시, 작전적 능력 증대 • UNIFIL과의 합동작전능력 증대 • 다른 부대들이 남부지역 전개시 역할모델 • 영구적인 휴전을 위한 적합한 환경 조성

세 번째로, 민군작전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LAF군 지원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동명부대의 민군작전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들이는 예산 대비 동명부대의 작전지역을 위주로 한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¹⁵⁾인 방법이기 때문에 UNIFIL 또는 레바논 전체로 볼 때 그 효과는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다. 특히, UNIFIL에서 가장 큰 예산을 민군작전에 투입하는 부대가 가장 협소한 작전지역에서 2007년 이래 반복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유엔과 UNIFIL, 레바논 정부, 레바논군(LAF) 모두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15) QIP 또는 연합민군작전을 통해 작전지역 외 민군사업을 진행하지만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시범연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증대하는 것은 동명부대 민군작전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2019년 레바논의 경제위기로, 레바논군(LAF) 또한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2021년 6월, 레바논군(LAF) 총사령관인 조셉 아운 장군은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최근 레바논 군인들이 받는 실질 월급 수준이 95~100% 감소함에 따라, 유능한 장교와 부사관들이 군을 떠나고 있다. 공식적으로 군인들에게 소위 ‘투잡’(Two jobs)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시범연대 또한 이 위기를 피해갈 수는 없다. 유럽연합에서 거액의 금액을 드려서 2022년 6월 시범연대 본부에 대한 준공식을 진행했지만, 1,400여 명이 활동해야 할 시설에 2022년 11월 기준, 100명도 채 되지 않는 병력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레바논군(LAF)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시범연대에 대한 교육훈련, 공여, 지원사업 등의 다양한 소요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작전 효율성 증대를 위한 『CAVEAT』 폐지

2020년 8월 베이루트항의 폭발로 인해 200명 이상의 사망자와 7천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식량창고와 300~400여 개소의 병원 및 진료소 등이 피해를 입는 등 상상을 초월한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했다. 2020년 국제 채무불이행 이후 심각해진 경제위기에 더해 베이루트항 폭발의 책임으로 전체 내각이 사퇴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며, 레바논 당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하기에 이른다.

베이루트항의 폭발로 인해 근처에 위치한 UNIFIL MTF(Maritime Task Force) 예하 20여 명 이상의 방글라데시 평화유지군 또한 부상을 입었다. 동명부대는 UNIFIL의 가장 후방에 위치하여 베이루트항과 가장 근접한 부대였기 때문에, UNIFIL은 부상자 후송을 위한 임무로 의무요원과 구급차를 베이루트로 급파할 것을 지시한다. 그러나 동명부대는 <표 5>와 같이 국가제한사항(National Caveat)을 근거로 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사령부의 작전명령을 불이행함에 따라 UNIFIL 내에서 동명부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이후 레바논 정부의 지원 요청으로 중국의 공병부대와 프랑스의 사령부 예비부대(FCR: Force Commad Reserve)가 사고현장으로 급파되어 잔해물 제거, 이동로 확보 등의 대민지원 역할을 수행하며 평화유지군으로서 레바논의 평화에 기여한다.

〈표 5〉 동명부대 국가제한사항(CAVEAT)

- 책임지역 외부로 전개를 금지하고 폭동진압 개입은 제한한다.
- 레바논 공권력이 투입되어야 할 폭동에 투입되어서는 안되지만 민간 폭동이 동명부대 주둔지를 위협시 자위권으로 대응한다.

국가제한사항은 여러 국가가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평화작전과 같은 환경에서 국가 주도의 군이 직면하지 않은 도전을 수반하게 한다. 유엔 총회 C-34에서 국가제한사항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던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제한사항은 위임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임무단의 작전에 제한요소를 줌으로써 최선의 방식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동일한 작전에 투입되는 평화유지군들이 다른 수준과 다른 대우, 다른 평가를 받는 결과를 낳으며, 평등이라는 기본원칙에 위배되게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제한사항이 없는 국가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¹⁶⁾

국가제한사항으로 인한 동명부대의 상황은 대한민국 국군이 반드시 본보기로 삼아야 할 교훈이다. 해당 국가 또는 임무단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국가제한사항으로 인해 평화유지군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위임명령에 대한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대한민국과 동명부대의 외교적 노력과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2019년 대한민국은 유엔사무국과 UNIFIL 측에 동명부대에는 CAVEAT이 없음을 수차례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UNIFIL 작전명령(OPORDER: Operational Order)에는 여전히 CAVEAT이 명시되어 있다. 상호 간에 행정적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외교적인 공식 요청을 통해 다시 한번 CAVEAT 폐지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후속조치가 되는 상황까지 추적해서 임무단에서 시행하는 작전지시에 대한 이행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동명부대의 임무를 UNIFIL 작전활동으로 제한하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국가적인 외교자산으로서 부대 역량을 발휘하도록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¹⁷⁾

16) Syed Akbaruddin Permanent Representativ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General Debate on Special Committee on Peacekeeping Operations (C-34) Statement", 2019.

17) 문진혁, "UNIFIL 위임명령 이행과 딜레마", 『국제평화활동센터』, 2022.

참 고 문 헌

- 문진혁, “UNIFIL 위임명령 이행과 딜레마”, 『국제평화활동센터』, 2022.
- 이경수, 김은비, “레바논 실패국가가 되어가고 있는가?”,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호, p231-263, 2021.
- United Nations, “CODE CABLE: UNIFIL - Approved Military Capability Study Report and next steps to implement the MCS recommendations”, 2019.
- UN,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Military Capability Study, 2022.
- UNIFIL, “FAP(Force Adaptation Plan)-2020”, 2021.
- UNIFIL, “OPORDER 6, Amendment 3”, 2022.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01”, 2006.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539”, 2020.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650”, 2022.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2020/1059, 2020.
- Luisa Blanchfield, “United Nations Issues: U.S. Funding of U.N. Peacekeeping”, 『Congressional Reasearch Service』, 2022.
- Syed Akbaruddin Permanent Representativ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General Debate on Special Committee on Peacekeeping Operations (C-34) Statement”, 2019.
- David Schenker, Assaf Orion, “Lebanon’s Crisis and UNIFIL’s Mandate Renewal”, 2021, <https://www.washingtoninstitute.org> (검색일: 2022. 09. 21.).

블루라인 현장에서 본 UNIFIL 연락처의 역할과 한계점

Roles and Limitations of UNIFIL Liaison Branch
On the Blue Line

소령 엄태섭
Um, Taesub



블루라인 현장에서 본 UNIFIL 연락처의 역할과 한계점

Roles and Limitations of UNIFIL Liaison Branch On the Blue Line

소령 엄태섭

Um, Taesub

서 론

1978년 시작된 UNIFIL의 평화유지활동은 레바논 정부의 요청에 따라 안보리가 22년 8월 31일부, 결의안 2650호(2022년)를 채택하였고 UNIFIL의 권한을 1년 더 연장했다. UNIFIL의 임무는 레바논과 이스라엘 사이의 적대행위 중단을 감시하고, 레바논 정부가 리타니강 남쪽 지역을 허가받지 않은 무장 병력, 무기 또는 기타 관련 자산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레바논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경 및 기타 입국 지점을 확보하여 무기 또는 관련 물자의 무단 진입을 방지하는 것을 돕는다. UNIFIL의 평화유지활동은 끊임없는 위협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양국간의 긴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왔으며 정치, 경제적 위기에 빠진 레바논을 굳건히 지원하는 큰 버팀목이 되어왔다. 특히 중동이 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UNIFIL은 분쟁 재발 방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양국의 신뢰 속에 임무수행하고 있다. 특히 UNIFIL 예하 연락처는 중동지역 분쟁의 역사적 현장인 블루라인에서 UN위임명령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필자는 UNIFIL에서 연락처 연락장교로 임무수행하면서 느끼고 있는 UNIFIL 내 연락처의 주요 역할과 개선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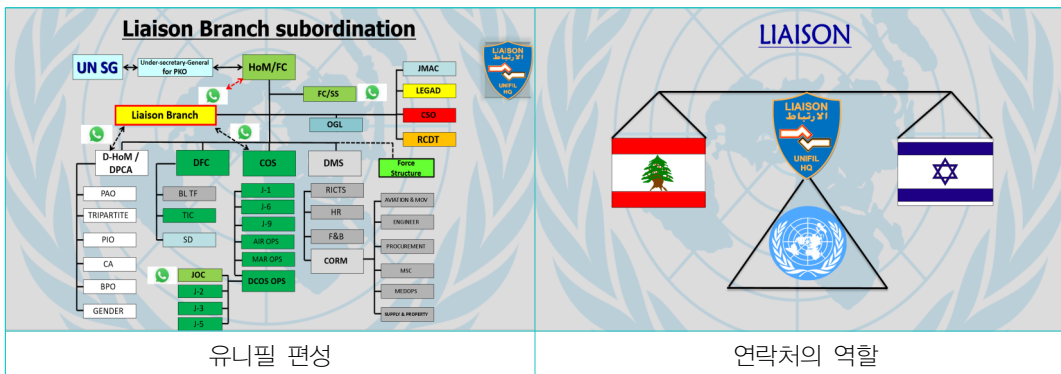
본 론

1. 연락처 창설 배경과 임무

2006년 전쟁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레바논 - 이스라엘 간 블루라인일대 도발과 대응은 양국간의 대화채널을 필요로 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연락처는 2006년 11월 11일 레바논군(LAF) - UNFIL - 이스라엘군(IDF) 간 3자 회담간 양국의 합의를 통해 창설되었다. 3자회담을 통해 합의된 항목으로는 ① 레바논(UNIFIL) - 이스라엘(북부사령부) 양국에 연락처 설치 ② UNCSCR 1701에 대한 위반과 기타 사건관련 정보공유를 위한 LAF - UNIFIL JOC-IDF 간 의사소통 채널을 구성 ③ 양국 장성급장교와 UNIFIL 사령관의 영구적 즉각적 접근 보장 ④ UNCSCR 1701 이행을 위한 월 단위 고위급 회담이었다. 이후 UNIFIL 주도하 양국간의 대화채널이 공식운용되어 왔으며, 2010년 1월 11일부 연락처는 임무의 특성을 고려 FC 직속 특별 참모부로 임무수행하게 되었다.

연락처는 연락처장(대령)과 부처장(중령)을 포함한 지휘부(2명)와 27명의 연락장교, 4명의 행정지원 부서관, 6명의 통역관 등 3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임무수행 요원인 연락팀은 21개국 출신 27명의 대위로부터 중령장교로 구성되어 있다. 각 팀은 2명의 연락장교와 1명의 통역관으로 편성되고 4개팀이 블루라인의 북쪽인 레바논일대를 2개팀은 블루라인의 남쪽인 이스라엘에서 비무장하 정찰임무를 수행하며 30분 이내 투입가능한 즉각 대응팀 2개팀을 항시 운용하고 있다.

연락처의 주요 임무는 ① 레바논군 - 이스라엘군 지속적인 연락 유지관련 사항을 TOC와 공유 ② 블루라인일대 정찰간 민간인과 군의 불법 활동을 보고 ③ 블루라인일대 상황평가 및 현장내 긴장 완화이다.



2. 연락처(Liaison Branch)의 임무 중요도 고려 편제 증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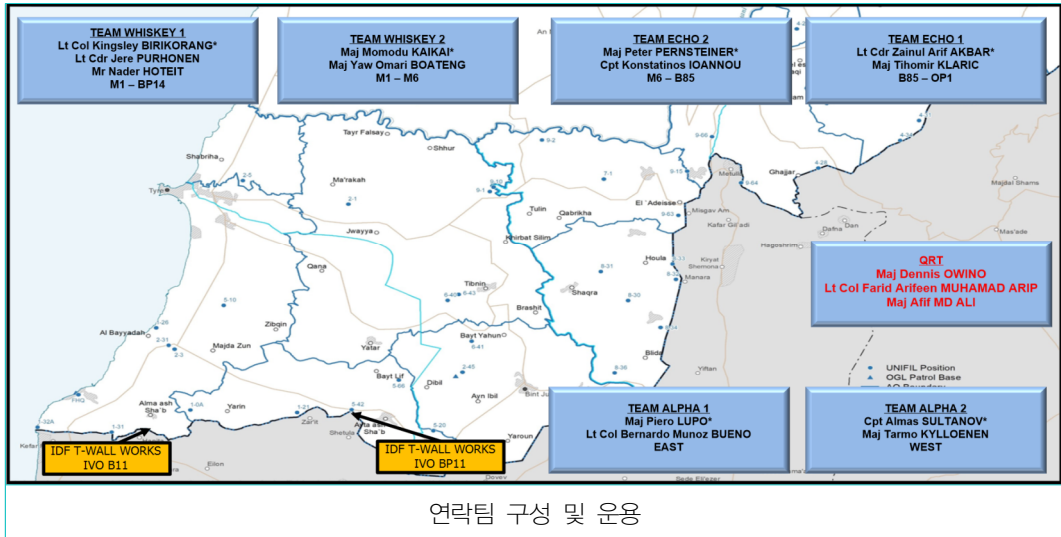
유엔결의안 2372호(2017)는 UNIFIL의 현시 능력(순찰활동, 조사 등의 활동)을 증가시킬 것과 양질의 정보 수집 및 보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하였다. 특히, 블루라인 일대의 작전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로 인해 UNIFIL과 여단 참모부의 편제 인원을 축소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연락처(Liaison Branch)의 경우 연락장교들의 원활한 임무수행과 블루라인의 안정유지를 위해 연락처의 편제가 보강되었다. 기존 22명에서 4명의 연락장교를 추가편성하여 블루라인의 순찰을 강화하였으며, 추가된 2명의 연락장교는 이스라엘 군(IDF)과 레바논 군(LAF) 사령부에 각각 배치되어 긴장이 고조될 시 중재 임무수행을 위해 편제가 반영되어 있다.



3. 연락처의 주요임무 소개 : 정찰을 통한 상황평가 및 공유

블루라인일대의 정찰과 상황평가는 연락장교의 핵심임무이다. 연락팀의 정찰지역은 레바논과 이스라엘를 가로지르는 200km의 블루라인을 따라 동·서부로 나뉘고 다시 각각의 지역은 두 개의 소구역으로 나뉘어 관리된다. 총 4개의 정찰지역을 4개팀이 정찰하면서 상황을 관리하고 특이사항이나 긴장이 높아질 경우 UNIFIL 사령관(연락처장), 양국 주요지휘관(현지 연락장교)들과의 소통을 통해 긴

장을 완화시킨다. 긴장의 시작은 블루라인을 넘어가거나 근접한 지역에서의 비우호적인 행위, 무장활동으로부터 시작된다.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긴장이 높았던 현장 사례를 소개하겠다.



3-1. 이스라엘군의 블루라인일대 수목제거 작전간 상황관리

다수의 긴장은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로 추정되는 민간인들의 활동에서 시작된다. 8.3일 아이타 아샤(Ayta ash Shab)지역일대(BP12)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블루라인 일대에서 이스라엘 공병의 수목제거 활동이 시작되었다. 전날 이미 관련 활동으로 인해 해당지역에 긴장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연락팀의 파견이 요청되었고 이스라엘지역과 레바논지역에 각 1개팀이 현장에 배치되어 작업이 진행되었다. 오전 7시경 블루베럴 BP12 서측에서 굴착기와 불도저가 굉음을 내며 이스라엘의 전술도로일대 수목제거 활동을 실시했다. 작전활동을 방호하기 위해 30여 명의 IDF 군이 드론, 군견을 통해 사전정찰을 실시했고 주요 고지일대에 저격수와 방호팀이 레바논을 향해 개인화기를 지향하고 있었다.

과거에 이미 수 차례의 납치와 기습공격을 당한 사례가 있는 이스라엘군으로서 블루라인 일대의 작업은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활동이다. 작업 시작 후 1시간 뒤 헤즈볼라로 추정되는 민간인이 이스라엘 경호팀 30m 이내 거리에서 식별되었고 작업지역 일대 사진촬영을 하며 블루라인에 근접하기 시작했다. 긴장은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 '09년 블루라인일대 잠목지역에 3일간 은거하며 이스라엘군의

정찰주기를 파악한 뒤 정찰 중이던 병사를 납치 살해하기도 했고 차량 이동하던 전술차량에 RPG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군은 블루라인 근접작전시 작전반경 2km 이내에 전차를 배치하고 주요 지역 내 진지에 배치된 과학화감시장비를 통해 특이사항을 확인한다. 이러한 이스라엘군의 압도적이고 위협적인 대응에 레바논군과 헤즈볼라 요원들은 강한 반감을 보이며 도발 수위를 높이다가 양측간 전투가 벌어지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고 한다.

작업이 진행되는 현장에서도 헤즈볼라 요원이 블루라인 선상까지 접근했으며 이에 이스라엘군은 접근하는 헤즈볼라에 총기를 겨냥하는 모습이 보였다. 블루라인은 물리적으로 명확한 선이 아니므로 관측지점과 관점에 따라 위반에 대한 판단이 엇갈려 UNIFIL과 같은 제 3자의 판단과 중재가 필요하다. 당시 우리팀(Echo 2)은 이스라엘쪽에서 임무수행하는 ALPH 1팀을 통해 “헤즈볼라요원이 블루라인 선상”에 있으며 “지속 접근시 IDF는 사격을 가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전했고 관련 상황을 영상을 포함하여 연락처에 보고했다. 현장에 있던 레바논군측에도 헤즈볼라 요원의 접근 및 블루라인 침범시 상황이 악화될 수 있음을 인지시켰고 레바논군과 헤즈볼라 통역관의 대화가 지속되었다. 잠시 후 상황을 채증사진과 함께 즉각 보고했다. 보고 후 얼마 뒤 접근하던 민간인의 활동은 중지되었고 오후가 되어 이스라엘군의 작업이 종료되고 나서 상황은 종료되었다.



IDF 수목제거 작전

이스라엘 연락팀 활동

3-2. DOF라인일대 이스라엘군의 진지공사 활동간 상황관리

8.2일 저녁 당직근무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내용은 내일 아침 0700까지 Echo2 지역으로 가서 DOF 699 지역일대 공사간 현장 상황관리였다. 사령부에서

현장까지의 거리는 도상으로 약 130km거리 약 1시간 30분 거리이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근처에 IDF의 굴삭기와 불도저가 작업을 준비 중에 있었고 IDF와 장갑차가 일대를 사전 수색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어서 작업지역 전방 감시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추정되는 IDF의 메르카바 전차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DOF 699 라인에서 불과 5m 정도 떨어진 이스라엘 지역에서 메르카바 전차가 우리를 겨냥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고 나서 기자와 카메라 촬영기사가 나타났고 이어서 다수의 민간인들이 차량을 타고 몰려와서 메르카바 전차 포구 앞에 섰다. 이때부터 긴장이 고조되었다. 포신과 기사사이의 거리는 불과 2미터. 마치 전차가 자신을 겨냥하고 있지만 두렵지 않음을 과시하듯 포를 등지고 중계방송을 하고 있었다. 민간인들과 레바논군 역시 움직이는 전차의 포구 앞에서 항의하듯 소리쳤고 이후 레바논군 병사 한 명이 RPZ-7을 휴대하고 전차를 지향하는 모습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쟁이 이렇게 나는구나.’ 느끼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동영상과 문자 유선으로 보고했다. 임무수행 기간 중 가장 긴장된 장면이었던 것 같다. 누군가의 작은 실수나 오발이 인명 손실을 넘어 현장을 전장으로 만들기엔 충분한 상황이었다. 우리는 지휘부에 현장 상황을 보고함과 동시에 통역관과 함께 레바논군 및 민간인들이 전차 앞에서 자극적인 행동을 그만둘 것을 요청했다. 이스라엘군측에게는 전차포구와 개인화기의 지향방향을 사람이 없는 쪽으로 해줄 것도 요청했다. 상황은 반 나절 동안 지속되었고 오후가 되어서야 이스라엘 전차는 장갑차로 교체되었고 레바논 민간인들의 자극적인 행동이나 방송활동이 줄어들면서 양쪽이 철수했고 상황은 종료되었다.



이스라엘 전차 앞에서 중계방송하는 현지기자



현장 상황 채증

3-3. 레바논 민간인 올리브 수확간 상황관리

10월이 되면 한가하던 들판에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는 올리브를 수확하는 레바논의 민간인들이고 다른 하나는 올리브 수확으로 민간인이 블루라인을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높아지는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연락장교들이다. 올해도 10.3일부터 올리브 수확이 시작되었고 1개팀은 올리브 수확간에 민간인들의 블루라인 월경이 잦은 BLIDA지역 올리브 필드에 고정정찰을 실시했다. 이곳의 올리브밭은 전쟁이후 일부가 블루라인이남에 분포되어있어 10월이되면 이스라엘군과의 협조를 통해 블루라인을 넘어가 올리브를 수확한다. 경제가 무너진 레바논 민간인들에게 올리브 수확이 유일한 생계의 수단이기에 블루라인을 넘는 것은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 블루라인을 넘어서라도 올리브를 수확하려는 민간인과 이를 막으려는 이스라엘군(IDF)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없애기 위한 UNIFIL의 노력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진다. 우리는 곳곳을 돌아다니며 인원을 파악하고 블루라인과의 거리를 확인한다. 통제하기 힘든 민간인이기에 어디서 몇 명의 인원이 올리브를 수확하는지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곳곳에 산재한 미확인 지뢰지대 역시 원활한 통제를 방해하는 요소이다. 이처럼 블루라인은 양국의 군대는 물론이고 국민들에게도 삶에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올리브 필드 활동 보고서

올리브 수확 현장 정찰

3-4. 레바논 민간인의 비우호적인 행위와 이스라엘군의 물리적 대응이 발생한 중요지역 상황관리

레바논 민간인의 비우호적인 활동은 블루라인 선상에 마주한 이스라엘 진지와 정찰하는 IDF군을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서 일컬어지는 비우호적 활동이라함은 인원이나 대상물에 돌이나 화염병을 던지거나 시위, 군사시설을 훼손하는 등의 행동을 일컫는다. 특히 올해 8월 30일 발생한 동부 홀라(Houla)지역 BP33일대 상황은 블루라인을 기준으로 반으로 나뉜 “쉐이크 압바드(Shaikhe Abbad)”의 묘 일대에서 민간인이 이스라엘진지에 다수의 돌을 투척하고 헤즈볼라 깃발을 거는 상황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이스라엘군의 위협사격과 연막 수류탄 투척 등으로 이어져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적이 있다. 블루라인 일대 주요 지역과 도로상에서는 순교한 레바논 민간인의 사진을 볼 수 있는데 다수가 이스라엘진지에 대한 테러와 공격에 이스라엘의 대응공격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이 때문에 추가적인 테러 및 비우호적인 활동의 사전 차단을 위해 연락팀이 관련지역을 정찰하고 특이사항 발생시 즉각 보고 및 조치한다.



홀라(HOULA) 지역 이스라엘기지 (E440)



이스라엘기지 (E440) 외부 비우호적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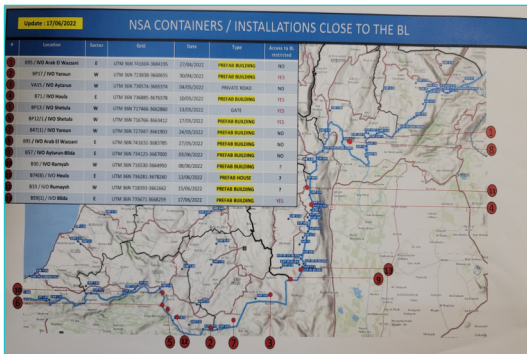
4. 연락처가 직면한 한계

앞서 말한 사례는 연락처의 주요활동 및 기능을 예로 든 것이며 이보다 더 다양한 사건과 예측불가의 우발 상황들을 맞는 것이 연락처의 일상이다. 매 순간순간 냉정한 판단, 즉각적인 보고, 채증, 현장 인원과의 소통은 이러한 우발상황들을 자연스럽게 매듭짓는다. 그래서 항상 상황이 발생한 뒤에 잘 보고하는 것보다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하고 대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팀의 임무수행과정에는 끊임없는 마찰요소가 따르고 있다. 이는 바로 “제한받고 있는 이동의 자유”,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는 안전”, “명확하지 않은 블루라인”이다.

4-1. Mandate에 명시되어 있지만 제한받고 있는 이동의 자유

임무수행 초기에 경험이 많은 연락장교로부터 자주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저곳에는 가지마라”, “정해진 도로로만 이동하고 지름길이나 이전에 가지 않은 곳은 가지마라”라는 말이다. 물론 가지마라라는 말이 지뢰나 물리적인 위험지역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들이 하는 가지마라라는 말의 대다수는 UN에게 비우호적인 마을이라는 의미이다. 전입초기 정찰루트를 다 기억하지는 못해도 가서는 안 될 곳은 확실히 기억했던 것 같다. 마을 길 곳곳에 “UN VEHICLE” 팻말이 있어 이정표 역할을 할 정도이다. 필자의 경험으로도 전입 초기교육 때 교육장교가 길을 잘못 들었는데 하필 헤즈볼라 요원들과 만나 그들의 위협적인 행동에 200m길을 후진하며 진땀을 빼며 벗어났던 기억이 아직 충격으로 남아있다. 또한 레바논 내에서는 민감지역으로 선정된 몇 개의 지점이 있다. 해당지역에는 1주일 전에 레바논군의 승인을 받고 들어갈 수 있으며 일부지역이나 건물은 승인과 관련없이 진입이 아예 불가능한 사례도 있다. 또 다른 방해요소는 블루라인일대 설치된 컨테이너와 목적 불상의 건물들이다. 블루라인일대 주요 고지나 이스라엘군의 진지 근처에 민간 컨테이너와 소형 콘크리트 건물 설치가 급증하고 있으며 해당지역 일대의 UNIFIL인원 접근시 위협적인 행동 등으로 정찰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찰 목적의 사진촬영에도 사진기를 뺏거나 사진을 공개하고 삭제할 것을 공공연히 지시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러한 위협과 마찰요소들은 연락장교들의 핵심임무인 정상적인 정찰을 방해하는 행위이며 이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블루라인 일대 컨테이너 현황 ('22년 6월 기준, 13동)



동부지역 이스라엘 진지 앞 컨테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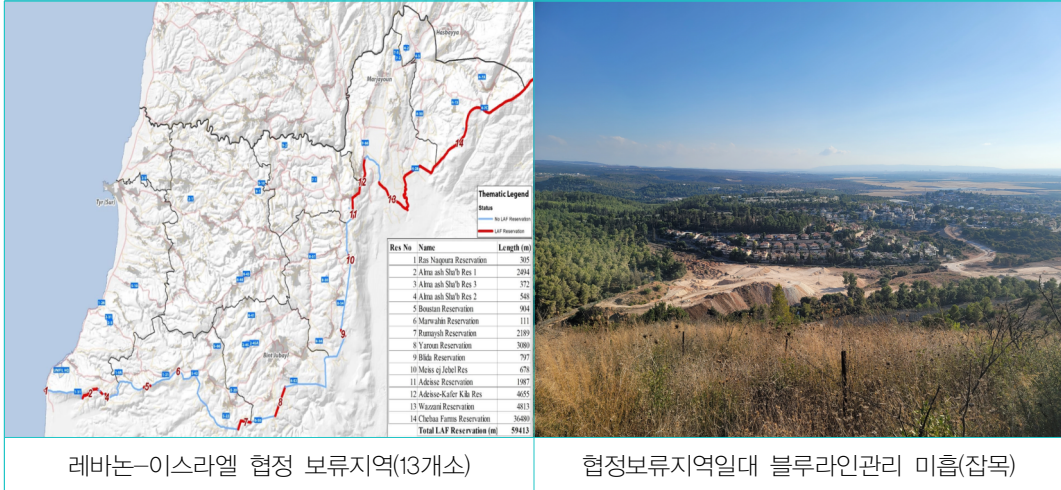
4-2. 위협받고있는 연락장교들의 안전

정찰 지역별 주민 성향의 차이가 있지만 앞서 말한 대로 무장하지 않은 연락장교들을 대상으로한 비우호적인 행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레바논에서 임무수행하는 연락팀의 경우 레바논 민간인이 이동중인 차량 앞을 막고 위협적인 언행과 차량을 치며 긴장감을 조성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처부 내에서도 민간인들에게 잡혀 소지품과 장구류 등을 빼앗긴 연락장교의 사례가 있으며 일부는 폭행당한 경험도 토로했었다. 또한 우리 연락장교들이 정찰하고 있는 맞은편에서 순찰중이던 이스라엘군이 연락팀을 향해 개인화기를 겨냥하고 있는 모습을 수차례 식별하였고 이를 채증하여 보고하고 항의한 바 있다. 동부지역의 OGL SO3라는 정찰 포인트를 지날 때면 이스라엘군의 오인사격으로 임무수행 중 사망한 OGL소속의 프랑스장교의 기념비를 지나가게 되는데 볼 때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느끼게 된다.

4-3. 완전하지 않은 블루라인과 일대 수목제거, 지뢰탐지 작업 필요성

블루라인이라는 어감으로는 마치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선일 것 같은 느낌이지만 실제 현장에는 듬성듬성 설치해둔 콘크리트 더미와 드럼통으로 만든 표식에 불과하다. 블루베럴 설치는 2017년까지 진행되다 양국의 협정 반대로 13개 핵심지역은 보류된 채 22년 1월까지 노후지역 보수수준의 작업만 진행되고 있고 일부지역은 블루베럴 사이가 멀고 지형적 제한사항으로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때가 있다. 때문에 양국가에서 블루라인을 침범했느니 하지 않았느니 의견이 분분할 때가 많지만 현장에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물리적인 근거가 없거나 즉각적인 판단이 제한된다. 최근 카퍼켈라(Kafer Kela)지역 블루라인일대에서는 레바논의 민간 건설활동에 대해 이스라엘이 블루라인 월경으로 UNIFIL에 항의했고 UNIFIL GIS팀의 측량을 통해 블루라인 월경이 확인되어 해당 건설활동을 블루라인 이북으로 조정할 것을 협의하여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블루베럴의 추가 설치하는 블루라인의 명확성을 보장해주며 이는 의도하지 않은 긴장된 상황조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상호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지역(Reservation Area)에 대한 합의를 조속히 이행하여 블루라인 가시화 사업을 UNIFIL 주도하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또한 블루베럴이 수목과 미확인 지뢰지대로 인해 접근과 감시가 불가능한 곳이 적지 않다. 중국, 캄보디아대대와 민간의 지뢰개척작업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속도는 불만족스럽다. 지뢰지대에 대

한 정보공유를 토대로 안정성이 확보된 가운데 도보정찰과 블루라인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이처럼 임무수행간 마주하게 되는 다수의 마찰요소에도 불구하고 연락처와 팀은 블루라인일대의 긴장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식별된 마찰요소는 일일 및 주 단위 미팅을 통해 공유하고 있으며 주요직위자 간담회와 월단위 3자회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락장교 임무수행기간 동안 내가 느낀 것이 있다면 이곳 레바논과 이스라엘, 특히 블루라인 일대에서의 연락처와 연락장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앞서 말한 UN DPO의 MSC결과를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다수의 인원 및 부대 편제가 감축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연락처의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그만큼 블루라인에서의 상황관리와 소통의 가교역할을 하는 연락처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도 연락장교들은 푸른색 조끼와 푸른 모자 하나에 자부심을 느끼며 블루라인 일대 작은 상황 하나 하나에 주목하고 특이사항 하나하나 빠짐없이 카메라와 보고서에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연락팀의 노력이 레바논과 블루라인에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유엔 서부사하라 평화유지임무단(MINURSO)과 군 옵서버의 역할 필요성

소령 김수현
Kim, Soohyun



유엔 서부사하라 평화유지임무단(MINURSO)과 군 옵서버의 역할 필요성

소령 김수현

Kim, Soohyun

I.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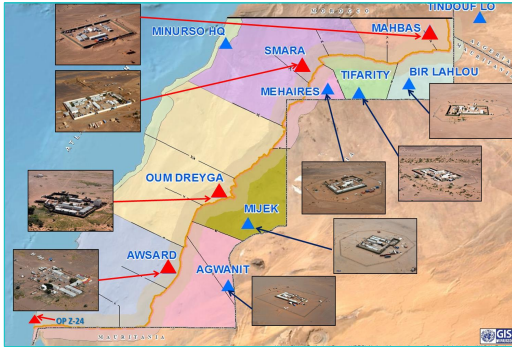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대한민국이 2009년부터 참여 중인 유엔 서부사하라 평화유지임무단(MINURSO: United Nations Mission for the Referendum in Western Sahara)에서 필자가 1년간 평화유지요원으로 활동한 결과를 토대로 군 옵서버의 임무와 역할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유엔 평화유지임무단이 전개한 서부 사하라는 아프리카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부 사하라를 동·서로 구분하는 모래방벽(Berm)을 기준으로, 동쪽은 폴리사리오¹⁾가, 서쪽은 모로코가 통제하고 있다. MINURSO에는 현재 3명의 한국군 옵서버가 서부사하라 지역에 배치된 각 초소 및 MINURSO 본부에 파견되어 임무수행 중에 있다. 아래 그림 1,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무단 내 전체 초소는 총 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무단에서는 모로코와 폴리사리오가 통제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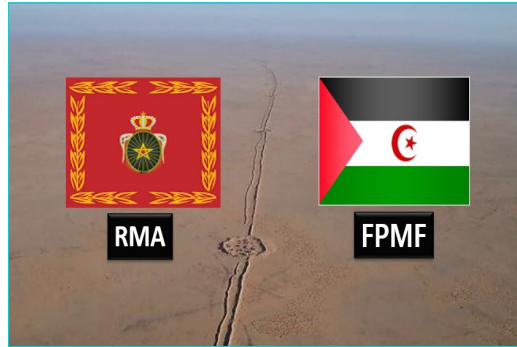
1) 폴리사리오(POLISARIO)는 Frente Popular para la Liberación de Saguia el-Hamra y de Río de Oro의 약자로 사하라인이 결성한 정치군사단체이다.

2) 그림 2에서 RMA는 모로코 군이고 FPMF는 폴리사리오 군을 의미한다.

<그림 1> 임무단 내 전체 초소 위치



<그림 2> 서부사하라 지역 통제 주체



1. 분쟁의 역사적 배경

서부사하라 지역은 북서아프리카에 위치한 광대한 지역으로서, 지정학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자원이 풍부하여, 1884년부터 스페인이 식민통치하였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가 몰락하고,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와 유엔의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스페인은 1976년에 서부 사하라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이후 스페인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았던 사하라인은 독립을 요구하였지만, 모로코를 포함한 주변국들도 이 지역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동시에 제기함으로써 서부 사하라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시작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부 사하라 주민들은 1976년 2월 ‘사하라 아랍민주공화국(SADR, Sahrawi Arab Democratic Republic)’의 수립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였고, 이에 모로코는 즉각 군대를 파견하여 폴리사리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모로코의 공격에 대하여 폴리사리오는 모로코에 대한 게릴라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폴리사리오와 모로코 정부군 사이에 본격적으로 분쟁이 시작된 것이다. 1988년도에 양자 간 휴전 협정이 체결된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1년 유엔 결의안 제690호에 의거 평화유지임무단 파견을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 서부사하라 선거지원 임무단(MINURSO)이 창설되었고, 선거활동 감시를 위해 군옵서버(Military Observer)가 이 지역에 최초로 파견되었다.

2. 최근 정세

서부 사하라 지역은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모로코와 폴리사리오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여전히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20년 11월 13일 모로코가 서부 사하라 남서부 지역인 가가랏(Guerguerat)에서 시위 중이던 사

하라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격하자, 이 사건을 계기로 폴리사리오 측은 약 30년간의 휴전협정 종식을 선언함과 동시에 전시상태에 돌입한다고 선포하였으며, 모로코군에 대한 포격 및 공격을 개시하였다. 현재까지 양측은 모래방벽(Berm)을 중심으로 총격, 포격, 드론 공격 등을 지속 감행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22년 8월에는 모래방벽 동쪽에 위치한 지역에 주체가 불명확한 드론 공격으로 폴리사리오 측에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폴리사리오 측은 모로코에서 공격한 것이라 판단하고 이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으며, UN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팀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발전기 및 차량 운영을 위한 유류 등의 지원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그 영향으로 현재 동쪽 팀사이트의 정찰활동이 잠정 중단되어 평화유지활동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엔에서는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근원적이고 장기적 과제인 영토 문제를 두고 양자 간 적대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서부사하라 지역 정세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짧은 시간에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당사자 간의 갈등요인뿐만 아니라, 양측으로부터 중립을 유지하려는 유엔과는 달리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각기 자국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모로코에 편향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II. 서부사하라 평화유지임무단(MINURSO, United Nations Mission for the Referendum in Western Sahara)의 평화유지 활동

앞서 서부 사하라 지역의 분쟁 기원 및 최근 현지 정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으며, 이제 필자가 겪은 군 읍서버의 임무, 현장 초소의 생활과 특징, 그리고 임무단 본부에서의 활동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나는 서부 사하라에서 군 읍서버 임무를 수행하며, 현장 초소에서의 6개월과 임무단 본부 참모로서의 6개월을 모두 경험해 보았기에, 각각의 임무수행과 역할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전반부 6개월은 서부사하라 동쪽에 있는 미하레스(Mehaires) 초소(Team Site)에 소속되어 정찰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후반부 6개월은 임무단 본부 작전과(U3) 작전장교로서 각지에서 올라오는 정보들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토받은 후 유엔본부로 보고하는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였다.

1. 군 읍서버에게 부여된 임무

MINURSO 임무단 內 군 조직은 사령관(Force Commander) 예하에 220여 명 정도의 군 읍서버 요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본부와 9개의 팀 사이트, 1개의 연락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MINURSO의 주요임무를 살펴보면, 2021년 10월 29일 채택된 결의안 2602(매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①정전(Cease-fire) 협정 준수 감독, ②불발탄(UXO) 및 지뢰 위협 감소, ③신뢰구축방안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정전협정 준수 감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군 읍서버는 매일 사막 모래방벽 및 모로코와 폴리사리오의 군 주둔지역을 정찰하면서 정보수집 활동을 수행한다. 이후 그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보고서로 작성하고, 이를 일일 단위로 임무단 본부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정찰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팀 사이트 내에서 계획에 따라 인원을 편성하고 부여된 임무에 따라 수행한다. 정찰 인원은 4명 1개 조로 구성(동측은 1개 조, 서측은 2개조로 구성)되고, 1명은 Patrol leader, 1명은 Navigator, 2명은 Driver 임무를 수행한다. 이 중 Patrol leader는 정찰 관련 계획을 작성하고 브리핑을 하며, 결과를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Navigator는 통신(HF, VHF)을 담당하고, GPS 설치 및 작동여부를 확인하며, Driver는 정찰 물품(물, 응급키트, UXO making sign 등)을 확인하고 정찰 차량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정기 정찰 이외 정전협정 위반사항이 유엔임무단 본부에 접수되면,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초소에 확인 임무가 하달되고, 초소 소속 군 읍서버가 피해 현장을 찾아가 목격자 인터뷰 또는 부상자 확인 등의 과업을 수행하며, 이후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보고를 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사진 1〉 지형정찰



〈사진 2〉 읍서버 현장정찰



두 번째 ②불발탄 및 지뢰 위험 감소 임무는 통상 UNMAS(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와 협력해서 실시한다. MINURSO와 폴리스اريو(군사협정 #2), MINURSO와 모로코(군사협정 #3) 간 체결한 군사협정에 따르면, 지뢰 및 불발탄에 의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뢰 및 불발탄 발견 시 즉시 통보, 표시, 제거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양 측에서 지뢰 및 불발탄 발견 후 제거활동 계획 시, 팀사이트에 즉시 보고를 하게 되면, 군 읍서버들은 팀을 이루어 제거활동 전·중·후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세 번째, ③신뢰구축방안 지원 임무는 대표적으로 모로코와 폴리스اريو 간의 평화유지를 위해 유엔임무단 본부에서 연락 임무를 수행하고, 나아가 양측의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의 진전을 위해 평화적인 방법의 중계 역할을 담당한다. 전제조건으로서 양측으로부터 공정성과 신뢰를 얻기 위해, 항상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명시된 임무 외에 매주 금요일에는 전 인원이 회의실에 모여 주간 회의 및 교육을 시행하게 된다. 이 때, 각 개인들은 본인이 맡은 교육주제(CASEVAC, Conduct and Discipline, Military Agreement 등)를 연구하고 다른 읍서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팀사이트 지휘관(중령)의 지침에 따라 예정 및 실시사항에 대해서 각 직책별 발표를 실시한다. 매주 일요일은 정비의 날(Maintenance day)로 정하여 팀 사이트에 있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점검목록표에 따라 타이어와 엔진 등을 정비하고 세차 등을 실시한다. 이 때 특이사항이 식별되면 초소 군수장교에게 보고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받게 되어 있다. 서부 사하라는 지역 특성상 모래사막과 암석이 많은 악조건 지형이어서 차량 관련 문제는 읍서버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매우 중요한 과업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실제로 '22년도에는 정찰 중 2차례의 차량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응급 후송된 사례도 있어 군 읍서버들에게는 운전 실력뿐 아니라 차량 정비도 매우 중요하다.

〈사진 3〉 차량 정비 및 점검



〈사진 4〉 응급후송 훈련



〈사진 5〉 교육주제별 발표



2. 현장초소(Team site)의 생활과 특징

나는 전반부 6개월 동안 미하레스라는 동쪽 현장초소로 발령받아, 독일, 헝가리, 멕시코, 중국, 파키스탄, 이집트, 인도, 러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장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임무를 수행했다. 각 팀 사이트는 지휘관을 중심으로 모든 옵서버들이 개인별 담당 참모 분야를 맡아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운영된다. 현장초소는 현지 특성상 연립 컨테이너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개인 숙소와 공용공간(사무실, 샤워실, 세탁실 등)으로 구분된다.

옵서버의 주요 과업인 정찰이 종료되면,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하루 일과에 대해 공유하고, 여가시간을 보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현장초소에서의 식사는 기본적으로 UN에서 제공된 식자재를 통해 준비되며, 서쪽은 모로코 채용인력을 통해, 동쪽은 폴리사리오 채용 인력이 요리를 해 주고 있다. 메뉴는 보통 스파게티, 피자, 닭요리가 제공되지만, 간혹 모로코 전통음식인 쿠스쿠스, 타진 등을 경험해 보면서 모로코의 음식문화도 엿볼 수 있다. 특히, 현지인들을 만날 경우에는 모로코 국민 차로 불리는 민트 티를 제공해줘서 모로코의 특색있는 차문화를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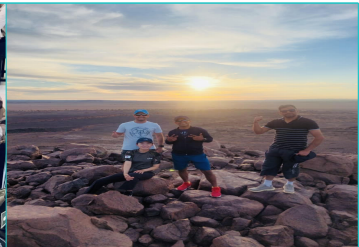
〈사진 6〉 팀사이트 전경



〈사진 7〉 정찰 후 식사



〈사진 8〉 여가시간(산책)



군 옵서버로 현장초소에서 근무하면서 최일선 현장의 모습을 경험하고, 분쟁 지역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면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순간들도 떠오른다. 예를 들어, 매일 정찰을 나가던 지역에서 지뢰가 발견되어 위험에 노출된 적도 있었으며, 모래 폭풍이 심해져 작전을 도중에 중단해야만 했던 순간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부 6개월의 사막 생활은 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어려움 그 자체보다는 그 순간을 함께한 좋은 사람들과 그 시간들이 소중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속에는 서로 다른 국적, 인종, 종교를 가진 구성원들이 모였음에도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며, 자발적으로 규정을 지키는 모습들이 있었다. 작전수행 간에는 긴장감을 느끼며 치열한 시간을 보내지만, 작전이

끝나고 오후가 되면 함께 운동하고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소하지만, 행복한 시간이 있었기에 앞으로도 그 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을 듯하다.

3. 군 읍서버에서 본부로

전반부 6개월간의 현장초소 생활을 마치고, 나는 팀 사이트 지휘관의 추천을 받아 MINURSO 본부 작전장교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팀 사이트에서 작전참모 임무와 동시에 양성평등 담당관의 역할을 담당했었는데, 이 당시 함께 했던 지휘관이 나를 좋게 보았는지 나를 본부로 추천해 주었다.

이제 후반부 6개월 동안 생활했던 본부 참모장교로서의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내가 속한 작전과에는 작전참모, 작전장교, 계획장교, 항공장교, 통신장교, 연락장교가 있었으며, 이 인원들과 함께 매일 팀사이트 작전 전반에 대해 확인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그 중에서 내 업무는 일일 단위로 작전결과를 확인하고 각 초소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종합하여 작전과장과 참모장의 검토를 받은 후, 뉴욕 UN 본부에 보고하는 것이었다. 본부에서 작전장교로 근무하면서, 내가 전반부 6개월 동안 현장초소에서 보고했던 정찰보고서가 MINURSO 본부를 거쳐 이렇게 종합 및 검토되고, 이후 UN 본부로까지 보내지는 일련의 과정을 알 수 있어 좋았고, 나아가 이런 모든 과정을 내가 직접 수행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고 보람있는 기간이었다.

그리고 유엔에서 사찰단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임무단에서 수행하는 읍서버가 시행하는 정찰 관련 현황을 업데이트하고,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본부에서 근무할 당시 본부에서 주관하는 행사, 특히 국제평화의 날, 지뢰 인식과 지뢰 활동을 위한 국제 기념일, 세계 여성의 날 등에 참석하면서 유엔에서 근무하는 민간인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사진 9〉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



〈사진 10〉 유엔 지뢰 제거활동 국제 지원의 날



Ⅲ. 나가며

1. 1년간의 소회

1년간 군 옵서버 임무를 수행하며 느꼈던 점과 더불어 한국군의 해외파병 정책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남기며 본 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나는 서부사하라 선거 지원 임무단(MINUSRO) 본부가 위치해 있는 모로코 라운(Laayoune) 공항에 첫 발을 내딛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 숨 막히는 더위와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Mosque)에서 들리는 기도 소리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리고 그때의 감정은 낯선 환경에 첫발을 내딛는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군을 대표하여 임무 완수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동시에 느낀 것이기도 하다.

임무 수행 중간 즈음을 돌이켜보면, 세계 분쟁 지역의 한 곳인 이곳 서부 사하라 최일선 현장에서 임무 수행한 경이로움, 분쟁 지역의 갈등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는 뿌듯한 감정들, 그리고 서로 다른 국적, 인종, 종교를 가진 구성원들이 모였음에도 오히려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서로의 문화를 알아갔던 동료들이 떠오른다. 또한, 지금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면서도 한국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현지인들의 찬사를 받았던 선배 장교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깃들었다. 나 자신도 그와 같은 선배들의 발자취를 쫓아가며 한국군의 훌륭한 임무수행 전통을 이어 나갈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으며, 앞으로 내가 걸어온 이 길을 유구히 이어나갈 후배 장교들을 떠올리며 마음 한 켠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2. 대한민국 PKO정책 발전을 위한 제언

대한민국 국군의 해외파병 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무엇을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지 1년간의 파견기간을 떠올리며 고민해 보았다.

먼저, 현지 분쟁상황을 고려 시 옵서버들에게 ‘전투용 응급처치키트’를 보급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할 필요성을 느꼈다. 현지 정세와 최근 총격, 포격, 드론 공격 등을 고려시 우발상황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실제 일부 타국군의 경우에는 상기 물품을 개인파병간 기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당위성이 인정된다.

〈그림 3〉 유럽국가 읍서버 보급 키트



둘째, 부대파병과는 달리 개인파견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계(의사소통 상대) 폭이 좁다는 측면, 그리고 파견 장소와 기간이 타국에서의 1년이라는 점에서 자국에서 오래 떨어져 있다는 측면, 현지 의료지원 체계가 국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국제적 감염병 발병 시 공항이 폐쇄될 경우 귀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국내 의료진이 화상채널 등 가용수단을 활용하여 해외 개인파견 인원에 대한 주기적인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과도하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개인의 인권이 강화되고 있고, 안보의 영역이 예전의 국가안보와 군사적 영역에서 개인안보와 비군사적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이 영역에서도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더욱이 개인 파견은 국가대표 또는 군 외교관과 같은 막중한 사명감을 부여받고 임무수행하는 만큼 향후에는 국가와 군이 더욱 높은 수준으로 개인 건강(신체, 정신) 관리 영역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위에서 제시한 2가지 제언들 이외에도, 평화유지활동 임무를 수행한 인원들의 역사적 기록과 경험들, 그리고 파견 후 제시된 제언들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책과 제도로 반영되고 보완·발전된다면, 그리고 후배 장교들이 선배 장교들의 열정과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나간다면, 대한민국의 국제 평화유지에 대한 기여도 또한 높아질 것이라 확신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